

2006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심포지엄

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전략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79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재단 서울여성



2006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심포지엄

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전략



서울특별시  서울여성

Program

| 프.로.그.램 |

시 간	내 용	발표자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식	
14:10~14:30	인사말씀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사회 고선주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 정책개발부장)	
14:30~14:50	기조강연 「가족정책의 뉴패러다임」	김태현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교수)
14:50~15:30	주제발표	
	제 1발제 「가족과 외부환경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 2발제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가족정책 발전방향」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홍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30~15:50	휴 식	
15:50~16:30	토 론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승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선자 (서울시장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16:30~17:00	질의응답	

Contents

| 목차 |

기조강연

- 7 가족정책의 뉴패러다임 · 김태현

주제발표

- 21 발제 1_가족과 외부환경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 변희순
37 발제 2_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들의 가족정책 · 윤홍식

토론

- 69 토론 1 · 김승권

- 73 토론 2 · 진미정

- 75 토론 3 · 이승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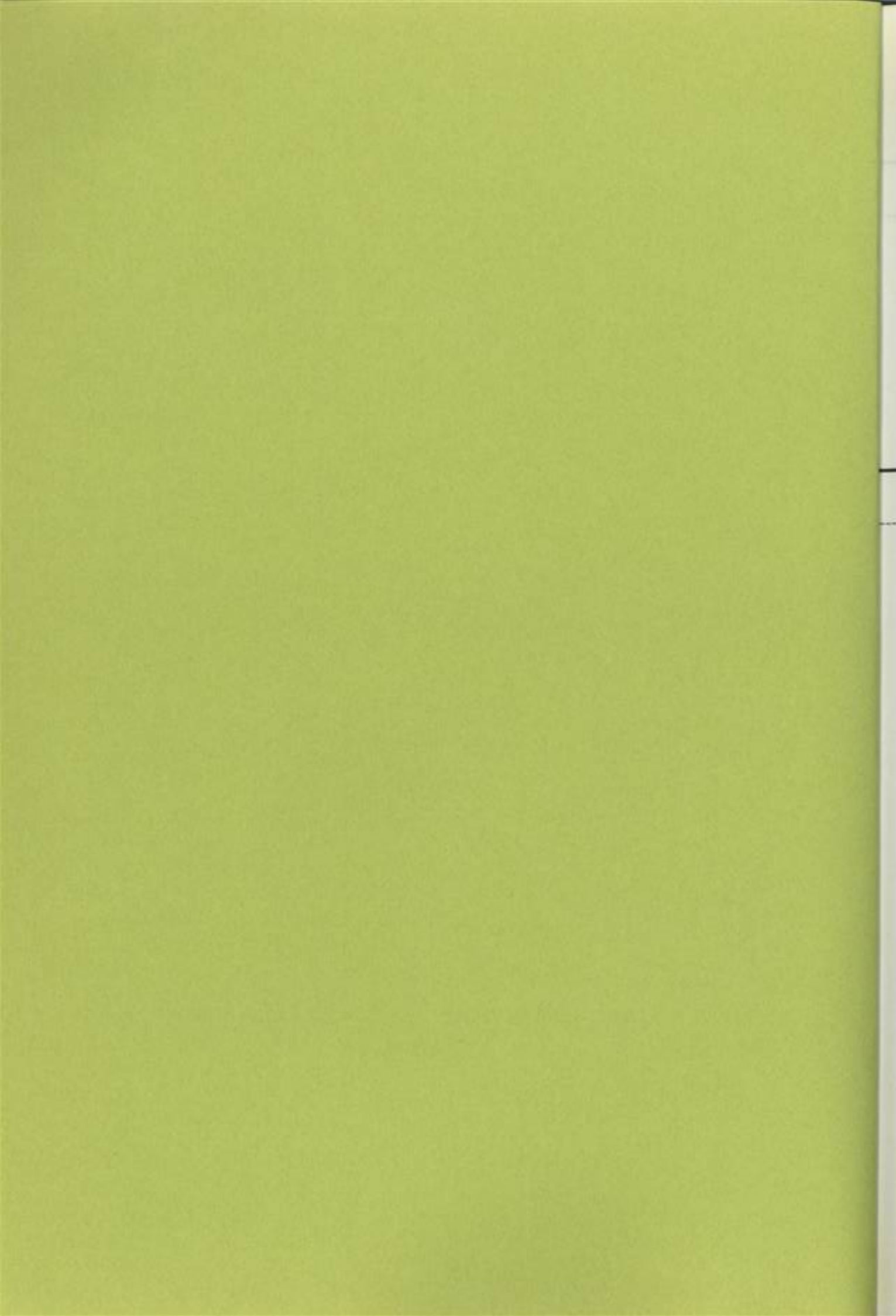
- 77 토론 4 · 김선자





| 기조강연 |

가족정책의 뉴패러다임



가족정책의 뉴패러다임

김태현_성신여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가족구성원 각각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전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당연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현대가족을 전망하는데 있어 흔히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가족 현상을 해체과정으로 보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그러한 추세가 보이기는 하나 인간 사회가 스스로 불행이나 문제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로 나뉘고 있다.

분명 오늘날의 가족은 과거의 가족과는 다르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가고, 결혼생활에서 자녀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결혼대신에 독신과 동거를 택하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에게도 가족 구성의 권리가 있음이 주장되고 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삶의 가족으로 독신, 한 부모, 이혼, 재혼, 노인 단독 등의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됨으로써 기존의 가족 형태와는 다른 훨씬 자유스러운 형태의 가족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또한 가족 내에서의 가족관계도 자유스러워지며 평등해 지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단일민족에서 다민족 체제로 가고 있고, 이질적 문화에서 살아온 북한가족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가족도 늘어가고 있다.

또한 현대 가족의 변화를 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정보화의 영향일 것이다. 정보화는 산업화가 가져온 가족원의 개인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산업화로 인해 이미 벌어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의 거리가 정보화로 인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조혜정, 1998). 또한 실재가 아닌 가상공간에서 결혼과 가족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이기숙 외, 2001). 가상공간에서 부부가 되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 및 가족의 변화는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가족구성원의 가치관 및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기존의 구조와는 다른 방향으로서의 재구조화와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급격히 변화되는 가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2. 가족정책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들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실체를 가리우고 있는 신화를 벗기고 있는 그대로의 가족의 모습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신화란 뚜렷한 증거나 심층적인 탐색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함인희, 2001).

1) 가족에 대한 신화 벗기기

가족의 실제 생활과 가족의 이상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존재하게 된다. 곧 자신의 가족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실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Rubin, 1994). 따라서 가족을 둘러싼 문화적 이상과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사회적 현실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표방하는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는 가족의 현실을 가리고 우리의 이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행복한 가족, 조화로운 가족관계,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곳으로의 가족을 기대하지만, 실제 우리의 가족생활은 필연적인 긴장과 갈등으로 충들을 경험하게 마련이다.

가족만큼 신비화(mystified)된 사회제도도 흔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Lash, 1997). 지금까지 가족은 비밀스러운 사생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적 가족생활이란 규범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궁극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합리화하며, 가족은 신성한 제도임을 뒷받침해 주는 도덕적 기초가 된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어두운 측면을 묵인하는 태도는 결혼과 가족생활을 왜곡시키며, 더 어렵게 한다. 보통 가족성원들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다른 가족성원들의 욕구를 부정하는 본능적 경향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조화로운 가족, 행복한 가족에 대한 신화는 의도적으로 갈등을 외면하고 오해를 합리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신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상 가족의 신화

우리는 흔히 정상가족과 대안가족 범주에 따라 가족을 구성한다. 정상가족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족이란 이리러려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규범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 범주에 들지 못할 경우 비정상적인 특이한 상황 아니면 무언가 부족한 결손 상황, 그래서 부끄러운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최근 들어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한 부모 가족, 복합가족 등의 등장하면서, 대안 가족 내지 비정상 가족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게 되었다(Skolnick, 1997). 실제로 오늘날의 가족은 가족관계와 가구 배열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양상을 더해 가고 있다. 여성의 취업확대와 더불어 주말부부, 월말부부, 기러기가족 등 만남의 간격에 따라 다양한 맛벌이 부부 가족이 증가하

고 있으며,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과 같은 한 부모 가족, 재혼커플 끼리의 결합, 독신가구, 동거가구, 동성애가구, 독거노인, 노인단독가구 등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족에 대한 신념은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신념은 위의 가족들을 비정상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정상가족과 대안가족의 이분법은 정상 가족에게도 상당한 압력이 된다. 외형적으로 정상가족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위장하는 요새가족(fortress family)은 정상가족 믿음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가족형태이든 나뉠대로의 장,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가족형태를 기준으로 다른 가족형태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생활이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 정상가족의 신화는 융통성을 지닌 새로운 가족의 신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경험의 통합성 신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에 대한 통념들, 즉 '가족은 서로 잘 이해한다.', '완전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들은(Benokraitis, 1999), 가족원들은 서로에게 훌륭한 지지자로서, 모든 것을 잘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속설을 담고 있다. 우리는 흔히 가족원들은 공통의 요구와 삶의 양식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리라는 가정을 굳게 믿고 있다. 곧 단합과 단결된 모습으로서의 가족 이미지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서의 가족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분담, 여가활동, 양육 및 정서적 지원, 소비결정, 취업문제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족생활은 성과 연령에 따른 가족성원들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일상화되는 영역이다. 버나드(J. Bernard, 1971)는 가족에서 그녀의 결혼과 그의 결혼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한 공간의 가족경험이 다름을 지적하였으며, 애커(J. Acker, 1992)도 가족경험과 이미지가 성(gender)의 권력배분에 따라 조직화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족 합의과정에 포함된 이미지는 신화이다. 즉 가족 내 의사결정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미지는 실제 가족관계에 상존 하는 권력관계, 가족성원들 간의 경쟁관계, 그리고 가족생활의 정서적 측면에 내재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부인하거나 애써 숨기는 기능을 한다. 가족생활의 정서적, 감정적 요소는 가족 성원들에게 단결과 협동을 불러일으켜 더 없는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만, 친밀성 자체는 사랑과 억압의 두 가지 요소 모두를 함축하고 있다. 제도로서의 가족은 억압적 요소와 보호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면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한 면만을 과도하게 경험하기도 한다(Rubin, 1976).

따라서 부부간 역할 분업, 가족의 의사결정 과정, 자녀양육 과정 등 대부분의 가족경험은 성과 세대에 따른 주도권 다름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이지 단결된 모습으로의 통합된 경험이 아니다.

(3) 공사영역의 분리 신화

가족과 사회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이분화 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나타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통념들은 '대다수의 가족은 자급자족(self-sufficient)한다', '가족은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준다.' 등이다. 곧 공사 영역

의 이분법은 가족과 사회를 좌우 대칭에 둬으로써, 가족은 무정한 세상의 안식처이며, 가족관계는 사회관계와는 달리 이타적이고 비경쟁적이라고 본다. 또한 가족은 자족적 집단이요, 독립적 실체로서, 사회의 도움 없이 사회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제도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족은 부적절한 가족으로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은 가족내에서 충족하기 어렵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시장 및 학교제도, 국가의 가족정책 등에 따라 가족기능이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런 공사 영역의 이분법적 사고는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보여준다(Skolnick, et.al., 1997). 또한 가족영역도 공적영역과 마찬가지로 권력개념의 역동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은 안식처로서 경쟁과 갈등이 없는 영역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가족의 존재나 범위와 한계, 가족 안에서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 그리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자격 등은 여전히 사회에 의해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다. 즉 가족법과 가족정책은 직접적으로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 미디어, 직장 등에서 내재하고 있는 가족이미지는 가족의 구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를 공적, 사적 영역으로 이분화 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인구환경적 변화 도래

가족의 신화를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족정책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가.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인구는 그 절대수가 계속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정도는 1960년에 2.9%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1%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06년 현재 9.8%이며, 오는 2018년에는 14%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이 24년인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의미한다.

【표 1】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20	115	41
독 일	1932	1972	2012	40	40
영 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한 국	2000	2018	2025	18	7

나. 노령화지수 및 노인부양지수

우리나라 연소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령화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표 2】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총 부양비	83.9	60.7	44.3	39.5	38.8	40.9	54.9
유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3.9	19.6	19.1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4.8	21.3	35.7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62.0	109.0	186.6

노령화지수¹⁾(%,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1970년에 7.2, 1980년에 11.2, 2000년에 34.3, 2020년에 109.0으로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²⁾(%)는 1970년에 5.7, 1980에 6.1, 2000년에 10.1, 2020년에 21.3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즉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짐을 의미하며 노인부양의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1)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X 100

2)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X 100

다. 평균수명의 연장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의한 평균수명 연장은 노년의 시기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기하고 있다.

[표 3] 평균수명 추이

(세)

	1971	1981	1991	2000	2010	2020	2030	2050
계	62.3	66.2	71.7	75.9	78.8	80.7	81.5	83.0
남 자	59.0	62.3	67.7	72.1	75.5	77.5	78.4	80.0
여 자	66.1	70.5	75.9	79.5	82.2	84.1	84.8	86.2
차 이	7.1	8.2	8.2	7.4	6.7	6.6	6.5	6.3

1971년 평균수명이 62.3세 였으나, 2000년에는 75.9세이며 2005년 현재는 77.1세 (남자 74.4세, 여자 81.2세)로 여성노인의 수명은 80세를 넘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공중보건위생의 향상, 유아사망률의 저하, 전반적 생활의 개선 및 의학의 발달에 의한 것이다.

라. 저출산율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저출산 현상이다. 1960년에 출산율 6.0명이 2003에는 1.19명으로 급감하여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표 4] 출산율

연 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계출산율	6.0	4.53	2.83	1.59	1.47	1.30	1.17	1.19

마. 노인의 성비구성

노인인구성비³⁾ 중 성비의 불균형은 고령일수록 더 심하여 대부분 여성노인이 오래 살며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비율이 높다.

【표 5】연령계층별 성비 추이

(천명, %, 여자 100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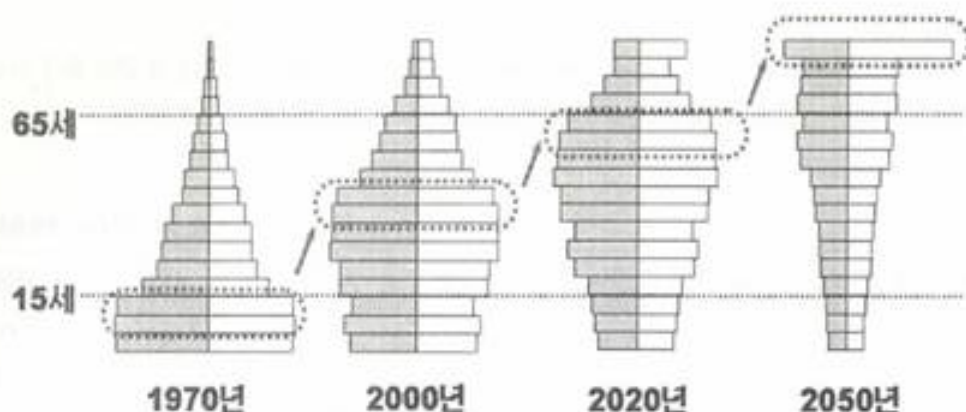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65세 이상							
구성비	991	1 456	2 195	3 395	5 302	7 667	11 604
성 비	3.1	3.8	5.1	7.2	10.7	15.1	23.1
성 비	70.0	59.7	59.8	62.0	69.7	75.2	78.3
70세 이상							
구성비	563	832	1 294	2 014	3 514	5 100	7 892
성 비	1.7	2.2	3.0	4.3	7.1	10.1	15.7
성 비	68.8	51.0	52.6	53.8	62.1	67.9	72.4
80세 이상							
구성비	101	178	302	483	957	1 805	2 571
성 비	0.3	0.5	0.7	1.0	1.9	3.6	5.1
성 비	50.3	33.6	35.8	39.1	42.1	49.5	53.6

약 7년의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 그리고 혼인 시 남녀 연령의 차이 및 남녀 노인의 재혼가능성의 차이로 인해 남녀 노인의 유배우자율은 매우 다르다. (남성노인의 유배우자율은 87.2%, 여성노인의 유배우자율은 36.6%)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비교하여 홀로 될 가능성이 더 크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시기는 평균 10년간량, 즉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바. 인구구조의 변화 모습

노인인구의 증가,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성비의 변화 등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모습을 피라미드형에서 종형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선진국형인 항아리 형태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 1965년 사이에 태어나 전후 및 산업화의 베이붐 세대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중장년층 남성이자로는 사회를 지탱해 나가기 어렵고 여성과 노인의 생산력을 활용해야만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3) 노인의 성비 : (65세이상 남성) / (65세이상 여성 100명)



〈그림 1〉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현재의 가족의 비관적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혼율의 증가이다. 표 6의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40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해 2000년에 33만 건으로 떨어졌고 조혼인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혼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2000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 2004년까지 계속 10만 건을 웃돌고 있다. 2001년 14만 명, 2002년 15만, 2003년 17만, 2004년 14만혼인에 대한 이혼비가 무려 35%에 달하면서 최근 이혼율의 급증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연도	총인구 (천명)	혼인 수 (건수)	조혼인율 (%)	이혼 수 (건수)	조이혼율 (%)	혼인에 대한 이혼비 (%)
1960	24,989	186,187	7.5	7,016	0.3	3.8
1965	28,670	259,081	9.0	8,150	0.3	3.1
1970	31,458	295,137	9.2	11,615	0.4	3.9
1975	35,341	283,226	8.0	16,453	0.5	5.8
1980	37,417	403,031	10.6	23,662	0.6	5.9
1985	40,420	376,847	9.2	38,838	1.0	10.3
1990	43,390	399,312	9.3	45,694	1.1	11.4
1995	44,564	398,484	8.7	68,279	1.5	17.1
2000	45,985	334,303	7.0	119,982	2.5	35.9

3. 가족정책의 뉴패러다임 방향

정상가족의 신화를 벗어나서 다양한 가족을, 가족의 통합성의 신화를 벗어나서 가족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을, 공사영역분리 신화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1)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structure lag을 제거해야 한다.

(1) 다양한 삶의 수용을 통한 모든 가족의 행복한 삶 추구

- 전형적 단일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의 수용 (Family Families)

(2) 맞벌이 가족의 취업여성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 구조의 걸림돌의 제거.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 여성인적자원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입직·승진, 보수에서 남녀 차별 금지

- 여성의 경제활동이 M 곡선을 긋고 있음

경제활동비율이 낮아지는 20대 후반~40대 초반의 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 육아휴직제도를 남성이 활용 시, 이를 승진 등에 가산점

-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보육서비스의 강화

- 여성정보화 전략계획 수립(USF) 등을 포함한 여성정보화 촉진

-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3) 노인인력을 보충적·잔여적 일자리에서 발전된 개념의 일자리 창출로 전환

- 노인을 위한 affirmative action

(4)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5) 사이버 가족의 등장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가상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가족이 등장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다수의 상대와 사랑을 하고 부부생활도 가능하다. 즉 자유롭게 전통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결혼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일이 없이 가상공간에서 부부생활을 하는 사이버 부부들의 출현은 현실 가족관계의 실험의 장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이상형의 파트너와 사랑을 한다는 점에서 전통의 성·사랑·결혼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부부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집단이며 이를 수행하면서 서로 간에 신뢰와 행복을 쌓아 가는 관계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과 부부는 결혼해서 산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부부의 성격을 지닐 수는 없다. 의무

나 책임도 없이 상대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배우자로부터의 진정한 관심과 지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각종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이른바 사이버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가족관계를 맺는 사이버 팸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내 동호회나 카페, 채팅, 게임 사이트 등에서 형성되는 사이버 팸(Cyber Family)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Cyber)와 패밀리(Family)를 합친 신조어이다. 이들은 비슷한 또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각각 아빠, 엄마, 삼촌, 이모 등의 역할을 맡아 서로 대화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정을 즐기는 한편 때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가족 관계로 만나기도 한다. 아빠, 엄마, 언니, 형, 동생 등 직계가족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는 증조 고조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사이버 상에 가상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들끼리 진짜 친인척처럼 행동하는 사이버 팸(cyber family)은 처음에는 5-10명 단위로 시작한다. 나이 차와 성별에 따라 복잡한 촌수 관계를 정리해 족보도 만들고, 사이버 가족끼리는 대화명에 같은 성을 쓰고 게임을 하거나 채팅할 때에도 엄마, 아빠, 형 등의 호칭으로 부른다. 처음에는 비슷한 또래들이 만나 나이 차와 성별에 따라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등의 역할을 맡았으나 최근에는 나이와 세대차를 뛰어 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런 팸 활동이 중, 고교생 등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번져 인터넷 한 채팅 사이트에만 1만개 정도의 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2) 가족의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가족정책

(1)가부장제 문화의 극복

- 양성평등사회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평등하며 공존하는 사회관계 형성은 실질적 남녀 평등사회 실현의 기초
-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2)부부갈등위기 극복 및 창조적 이혼을 위한 정책

- 이혼 전 상담제도 도입
 - 가족상담 활성화
 - 가족생활교육 활성화
- (부부간의 성역할 적응 프로그램,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 치매가족교육프로그램, 노년기 성교육 프로그램)

(3)가정폭력 및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피해 가족 지원

- 성매매관련 법제의 정비 및 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
-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4)세대간의 갈등 극복을 위한 세대통합

- 젊은 여성의 보육담당자에 대한 요구와 할머니들의 아이 돌보기 성향의 점점 찾기를 통한 세대교류

3) 가족의 일들이 공적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가족정책

(1)가족, 국가, 기업간의 경계 변화

가족구성원내의 여성으로 대변되는 가족, 공공지원으로 대변되는 국가 그리고 영리 목적의 민영화를 대변하는 시장 간의 책임의 경계의 변화를 분석한 가족정책

(2)전업주부의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

-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3)돌봄노동에 대한 지원

참고문헌

- 김태현, 전길양, 김양호(2003), 사회변화와 결혼,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기숙, 공미혜, 김득성, 김은경, 손태홍, 오경희, 전영주(2001), 결혼의 기술, 학지사.
- 함인희(2001), 다양한 가족: 신화로부터의 탈출, 변화하는 사회다양한 가족, 양서원, 13-35.
- Acker, J.(1992), Gendered institutions: From sex roles to gendered institutions, Contemporary Sociology, 22, 565-568.
- Benokraitis, N. V.(1999), Marriage and Families: Changes, Choices, and Constraints(3rd), Prentice-Hall.
- Bernard, J.(1971),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 Bantam.
- Lasch, C.(1997), Women and the Common Lif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Rubin, L.(1976), Worlds of Pain, New York: Basic Books.
- Scolnick, A. & J. Scolnick(eds.)(1997), Family in Transition(9th), New York : Long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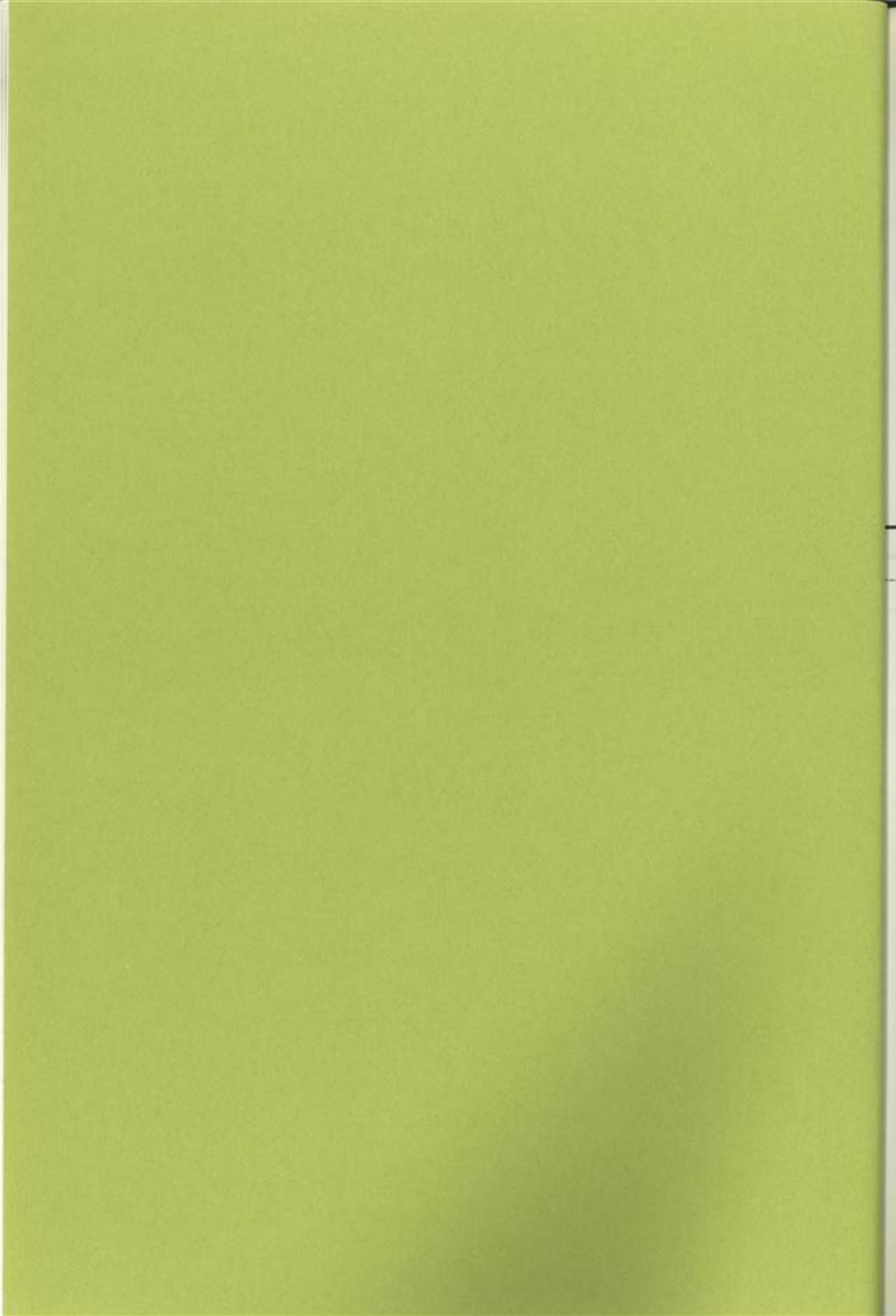




| 주제발표 |

발제 1 _ 가족과 외부환경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발제 2 _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들의 가족정책



가족과 외부환경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변화순_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제기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와 1인가구 및 1세대 가족의 증가, 혼인을 감소, 이혼율 증가, 저출산율,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결혼이민자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증가 등은 다양한 가족의 도래하고 있음. 이는 가족정책의 방향이 종전에 취했던 요보호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넘어서 일반적이고 다양한 가족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비전이 없이 개별부처차원의 대책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 처하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가족과 외부환경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는 개별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노인단독가구의 돌봄, 가족 내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 등 개별가족이 가질 수 있는 기능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결혼과 가족구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임.

광의의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출범하였음.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족관련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2005년 가족실태조사」와 더불어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경기도 역시 2006년 「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를 수행하였음. 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의 조사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실시한 경기도 단위의 조사임. 이에 서울시에서도 가족조사와 더불어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가족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가족정책의 기본이념, 원칙, 그리고 시책행방안의 제시를 통하여 가족과 외부환경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기본관건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체계구축에 대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을 모색하고, 둘째, 서울시의 가족시책 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방향에 기반을 두되, 서울시의 적합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가족과 외부환경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가. 원칙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 확립: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를 위한 국가의 책무 강화

●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문제를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계획의 목적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야 할 것임. 특히 기본이념에서 다양성, 민주성, 평등성,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공동체 발전에 기여의 개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의 포괄성 확보

● 일반 가족의 안정성과 개별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가족정책 마련을 통해 가족정책의 예방적 성격을 확대함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욕구에 부합되는 종합적, 다층적(multi-dimensional)인 가족정책의 수립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회적 필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형평성과 다양성 지향

●가족정책은 성, 세대, 계층 간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하도록 하여야 함. 이것은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가족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함과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

●가족정책의 기본이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와 민주적인 삶을 보장하고, 가족의 형태, 가치, 기능 등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이념으로 규정으로 방향 설정하여야 함.

선택권과 책임성의 조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선택에 따른 개인의 책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통해 지원함. 예컨대,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의 해소를 선택한 성인 남녀의 선택은 존중하되, 그들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자녀양육비의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개인의 다양한 취향과 선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하는 가족정책, 즉 한부모가족, 국제결혼가족,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애 주기에 따른 정책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고 동시에 사회성원으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젠더 관점을 고려한 가족정책시책 마련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능력을 존중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노동권과 가족권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지향함.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 노동권과 부모권의 문제는 대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양자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결국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따라서 가족정책기본시책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그동안 가족에서 담당해 왔던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의 역할에 대해 젠더 관점을 고려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할 것임.

●종전에는 노동권과 부모권에서 여성의 모성에 한정하여 논의 및 정책이 입안되어 모성보호의 측면만 강조되었음. 그러나 두 가지 권리의 조화를 단지 여성의 문제로 간주하던 기존의 관점은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

을 드러내었음. 동일한 정책이라도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정책의 관점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점임.

●예를 들어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에 있어서 남성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며, 여성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 따라서 이제는 노동권과 모성권의 한계에서 벗어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양성 모두의 중요한 시민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즉, 노동권과 부모권의 조화란 남성에게는 시장영역에서의 노동과 함께 가족영역에서의 돌봄과 부양노동(부성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여성의 역할은 가족 내에서의 돌봄노동과 함께 시장영역에서의 생산노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이는 남성에게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부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정기적인 가족조사 실시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매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서울시에서도 정기적인 가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5년의 주기가 길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방향

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장가정의 양립,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임신·출산·육아의 권리보장, 가족의 건강지원, 가족의 경제적 지원, 안전한 가정생활보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 가족문화의 발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이혼예방 및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조사 등을 지원하도록 함.

가족정책 기본시책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및 가족구성원이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노동 및 교육정책 등 재반 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기업운동을 위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고 간호휴가를 실시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남성들이 부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해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 및 부양에 있어서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관련제도 및 법률에 있어 부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임신·출산·양육의 권리 보장

- 모든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고 태아검진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특히 일하는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또한 가족구성원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이는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함.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건강 지원 및 경제적 안정 지원 강화

-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건강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함. 또한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안전한 가정생활 보장

- 가정 내 폭력 등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위험환경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도록 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

- 부부, 세대 간 등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예방, 상담, 교육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이혼예방 및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이혼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조사 실시

- 이혼조정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강구함.
- 이혼가족의 자녀양육비 산정 및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녀양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가족문화 발전

- 가족여가문화, 평등가족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가족해체 예방,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합리적인 생활 문화 및 소비문화 등에 관한 사항 조항 마련 등 가정생활문화에 대해 총괄적 조항 마련

다. 전달체계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가족센터의 업무의 명료화

●중앙, 시도, 시군구센터별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함.

- 시도 차원의 센터에서는 시도를 단위로 해서 시·도 단위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시·도 단위의 통합 정보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시·도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사업, 시·도내 가족정책에 관한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연계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서울시의 경우 시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확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시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단위의 센터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구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사업을 계획, 방향 제공,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수행해야 할 것임.
- 구차원의 센터는 상담지원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사업, 가족지원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사업, 가족지원사의 교육·관리·파견 등에 관한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국제결혼가족 전담 센터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는 별도의 국제결혼가족 전담센터를 설립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가족정책기본계획¹⁾

가. 기본계획의 비전과 원칙 수립

한국여성개발원(2005)의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6)의 「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에 의하면 정책의 비전으로 각각 '행복하고 평등한 가족', '모든 가족이 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설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통된 주 핵심 개념은 행복과 평등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것은 가족구성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소통을 통한 관계, 서로 다른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계, 가족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연대성을 고양하는 관계를 통해 행복하고 평등한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함.

서울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비전의 제시가 중요한 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의 연계선 상에서 모색하되, 특수성을 감안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나. 목표 및 추진전략

기본계획수립은 가족 내의 성별, 세대 간에 그리고 가족들 간에 모두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가족원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목표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첫째,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 강화, 둘째, 민주적 가족 문화의 조성, 셋째,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여건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는 첫째,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둘째, 가정과 일의 조화로운 양립, 셋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다. 기본계획의 핵심영역 및 정책과제 구성

기본계획의 핵심영역은 건강가족기본법상의 기본시책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함. 핵심과제로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임신·출산·육아의 권리보장, 가족의 건

1) 2006년 4월 16일 현재,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의뢰로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장혜경), 를 수행하였음. 경기도 역시 도 차원의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연구로서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이 수행한 「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 연구책임자(정기선), 를 수행하였음.

강지원, 가족의 경제적 지원, 안전한 가정생활보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 가족문화의 발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이혼예방 및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조사등과 관련된 시책의 개발이 요구됨.

●기본시책은 핵심영역의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표 1), 여성가족부(안)의 경우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립,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열린가족문화의 조성, 돌봄노동의 사회분담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가족정책추진인프라구축을 핵심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음(별첨 1), 경기도(안)의 경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분담체계 구축,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확대, 가족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제시하고 있음(별첨 2).

●여성가족부(안)의 경우 중앙정부로서 법·제도의 정비, 지원체계의 확립, 문화적 측면에 관한 계획이 부각된 점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의거 국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을 중점 영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사료됨. 한편 경기도(안)의 경우 지자체에서 요구되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위의 두 안을 참고하되 각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현안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각 구를 총괄할 있는 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표 1】 여성가족부(안)과 경기도(안)의 핵심영역 및 정책과제 영역의 비교

여성가족부 (안)		경기도(안)	
핵심영역	정책과제	핵심영역	정책과제
1.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립	1-1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4.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	4.1 가족의 빈곤예방 및 저소득 가족 지원강화
	1-2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		4.2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지원
			4.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2.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2-1 임신·출산의 사회적 보호기반 확립		
	2-2 생애주기별 가족건강의 도모		
	2-3 가족원의 폭력예방 및 안전한 가족 환경 조성		
3. 일련 가족문화의 조성	3-1 평등한 가족관계증진	1.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1.1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3-2 다양한 가족문화 수용		1.2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 서비스 확대
4. 돌봄노동의 사회분담화	4-1 가족의 양육책임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분담 체계 구축	2.1 출산에 대한 서비스 강화
	4-2 돌봄의 성별공유 지원제도 확립		2.2 영유아대상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 및 질 제고
	4-3 가족돌봄의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2.3 방과후아동보육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2.4 노인/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5.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1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1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5-2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3.2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6.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6-1 가족정책의 총괄추진체계 정비	5.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5.1 가족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운영
	6-2 가족관련 법·제도의 정비		5.2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5.3 가족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라. 서울시 가족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²⁾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방안연구」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관별 운영개요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상담, 교육, 문화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내용적으로는 시범기관별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가족관계 증진, 가족위기에의 상담 개입, 가족문화생활 등이 주를 이룸.

●이와 같은 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의 배치는 최근 이혼,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자녀살해, 자살 등 가족 내부의 갈등이나 가족관계가 심리적으로 와해되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 간 문제가 극한에 가기 전이나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상담과 교육의 강화를 통해 가족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봄. 또한 현대사회 가족의 특성은 주로 친밀성과 개인주의화로 규정되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앞으로 부부간, 부모-자녀 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하기 위한 교육이나 문화적 차원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라고 봄.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보육과 노인부양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한 일과 가족의 양립이나,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과 같은 가족정책의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고 봄.

●무엇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가족정책 이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봄. 따라서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향하는 가족정책 지향성을 반영하면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 내용 구성이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과제로 남는다고 지적함.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방향

●본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앞서 제시한 가족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2) 여성가족부는 20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발전방안연구」, 연구책임자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를 용역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수행하였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방안은 본 보고서를 인용하였음.

● 새로운 가족정책의 서비스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정책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단절을 경험하거나 일하고자 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가족구성원(대개 여성들)의 육구를 보육시설 및 학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연결시키며, 인력개발센터나 고용정보센터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부장제적이고 불평등한 가족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는 가족들을 지역사회 의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여성회관, 가정폭력보호시설 등)이나 가족상담소 및 가족치료기관으로 연계시키고 전문화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결혼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가족에게는 아동, 부부를 위한 심리정서적 상담이나 이혼 후 가족관계 재정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함과 동시에 일자리 및 보육시설과 연계, 양육비 지급, 자녀양육 및 주거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혼 후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박탈감과 빈곤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즉 파편화되고 고립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가족복지 욕구의 충족이 불가능함.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단순히 상담을 지원하는 직접 서비스 전달기능보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연계구조 구축을 통해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수 있다고 봄.

【표 2】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안)

주요사업	구체적 사업 및 서비스
상담지원사업	일상생활 상담 -가족생활의 일상적 문제나 고충에 대한 생활상담(법률 지원, 고용연계지원, 보육정보/연계지원)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문제 상담(ex. 이혼 등) 전문화된 상담지원 -위기가족(가정폭력, 이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가족관계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화된 채널 활용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타기관 의뢰 연계
지역단위 교육 및 문화사업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가족관계 향상(결혼전 준비교육, 예비부모, 부모자녀간, 부부간 의사소통 교육 등) -평등한 가족생활 영위(가족 내 역할분담, 가족간 소통, 돌봄의 공유 등) -생애주기적 가정생활 계획(노후준비, 생활설계, 자녀학습지도 등) -가족구조의 다양성 수용(가족에 대한 인식전환, 가족유형에 적합한 가족생활 방식 등) 지역사회 가족생활문화 변화 유도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지역사회내 자원봉사활동화와 새로운 가족여가문화 확산(ex. 주말농장, 지역장터 등) -가족간 결연 사업 -지역사회 구성원 간 다양한 멘토링 형성 다양한 채널의 교육, 문화 사업 확산 -센터 방문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방문형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가족친화형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주요사업	구체적 사업 및 서비스
정보제공 사업	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가족정책 및 정부제공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이혼시 대책 관련 정보제공,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교육과 직업문제, 임대주택 및 주택보유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사회내 고용기관, 보육 및 노인보호 기관, 전문화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DB망으로 포괄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사업	지역사회 가족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가족관련 유관기관간 일상적 협력체계 구축 -사안별로 사업 및 서비스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ex.보육시설, 교육기관, 자활기관 등과 함께 공동 프로그램 운영) -각종 가족관련 기관에 대한 성공적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ex.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가족관련 연구소와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정보의 공유(보육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여성회관 등) 개별가족에 알맞은 서비스 연계 -특수한 욕구에 적합한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계(보육 및 교육시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육정보센터, 인력개발센터, 고용안정센터 등) 가정봉사원(가정보육도우미, 출산/가사 지원도우미) 연결 및 관리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을 위한 한 지원서비스 인력(가정보육도우미 등)을 연결 및 배치 -가정봉사원의 서비스 질이나 내용에 대한 훈련과 지도 -가정봉사원 사후 관리 및 교육 -가정봉사원 연결망 구축 -가정봉사원 이용 가족들로부터의 피드백 장치 마련 -긴급상황시 대리 가정봉사원 파견 및 배치

참고문헌

- 변화순·최윤경(2004), 「가족정책의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황정임, 조숙현(2006),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마련연구」, 여성가족부.
장혜경 외(2005),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장기선의(2006), 「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장재훈, 송다영, 강창현(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별첨 1〉「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의 가족정책과제

핵심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1.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립	1-1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1-1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검토 1-1-2 이혼 후 아동양육비 확보제도 마련 1-1-3 가족의 빈곤예방 및 지원체계 확립
	1-2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	1-2-1 다양한 가족유형의 사회적 통합 방안 마련 1-2-2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지원 1-2-3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2-1 임신·출산의 사회적 보호기반 확립	2-1-1 태아와 임신부의 안전 환경 조성 2-1-2 출산휴가 의무시행 및 감독 강화 2-1-3 출산휴가 대상자 확대와 지원체계 확립
2.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2-2 생애주기별 가족건강의 도모	2-2-1 여성, 청소년, 노인의 건강 및 안녕 지원 2-2-2 가족건강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2-3 가족원의 폭력예방 및 안전한 가족 환경조성	2-3-1 가정폭력 및 학대의 통합적 예방체계구축 2-3-2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보호 2-3-3 가정폭력 및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개입확대
3. 열린 가족문화의 조성	3-1 평등한 가족관계증진	3-1-1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정착을 위한 인식 및 기반마련 3-1-2 가족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1-3 건강한 가족여가문화 확립
	3-2 다양한 가족문화 수용	3-2-1 다양한 가족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문화 조성 3-2-2 전업주부의 사회적 연계제고
	4-1 가족의 양육책임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4-1-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4-1-2 다양한 육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확충 4-1-3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마련
4. 돌봄노동의 사회분담화	4-2 돌봄의 성별공유 지원제도 확립	4-2-1 아버지 출산휴가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통한 부모시간 확대 4-2-2 여성의 돌봄전담에 기인한 위업주부의 경력단절 극복장치의 제도화
	4-3 가족돌봄의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4-3-1 가사 및 간병·수발지원 시설확충과 서비스이용 쿠폰제 도입 4-3-2 가사 및 돌봄노동 가치평가
	5-1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5-1-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참여유도 5-1-2 직장 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5.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2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5-2-1 돌봄서비스의 지역사회적 기반구축 5-2-2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6-1 가족정책의 총괄추진체계 정비	6-1-1 가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및 평가 6-1-2 민·관 및 중앙·지방간 협력·조정강화 6-1-3 가족서비스인프라 확충과 내실화
6.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6-2 가족관련 법·제도의 정비	6-2-1 가족관련 법령정비 6-2-2 가족관련 실태 및 정책육구 조사·연구 6-2-3 가족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기반 조성

〈별첨 2〉「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의 가족정책 과제

핵심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1.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1.1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1.1.1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1.1.2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통합 1.1.3 평등하고 조화로운 가족관계 정립 및 확대
	1.2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 서비스 확대	1.2.1 가족문제 예방 체계 내실화 1.2.2 가족문제 치료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분담 체계 구축	2.1 출산에 대한 서비스 강화	2.1.1 임신·출산 관리서비스 강화 2.1.2 산모자원서비스 강화 2.2.1 보육의 공공성 강화
	2.2 영유아대상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 및 질제고	2.2.2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대 2.2.3 가정보육의 질 제고 2.2.4 보육서비스 지원 시스템 강화
	2.3 방과후아동보육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2.3.1 방과후아동보육 서비스 확대 2.3.2 방과후아동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2.4 노인/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2.4.1 노인/장애인 돌봄 시설 확충 2.4.2 가정봉사원 운영의 내실화 2.4.3 가족돌봄 지원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1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3.1.1 기업내 가족친화제도의 개발 및 활성화 3.1.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3.2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3.2.1 가족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2.2 가족단위 자원봉사 강화 3.2.3 가족단위 문화 활동의 활성화
4.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	4.1 가족의 빈곤예방 및 저소득 가족 지원강화	4.1.1 가족의 빈곤예방 및 긴급지원체계 확립 4.1.2 저소득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4.2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지원	4.2.1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4.2.2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내실화
	4.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4.3.1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4.3.2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4.3.3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4.3.4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5.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5.1 가족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운영	5.1.1 가족관련 각종 조례 제정 및 시행 5.1.2 가족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5.2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5.2.1 시·군 가족정책 전담부서 설치 권고 및 담당인력 교육 실시 5.2.2 가족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2.3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확대 및 운영 5.2.4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지원서비스기관간 연계강화
	5.3 가족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5.3.1 경기도 가족관련 기초자료의 생산 5.3.2 시·군 단위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유도 5.3.3 제1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5.3.4 제2차 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준비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들의 가족정책: 부모휴가, 아동보육, 지방정부의 역할¹⁾

윤홍식_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문제제기

복지국가 위기는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경제위기로부터 촉발된 복지국가의 위기는 남성생계부양자 중심 복지제도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논자들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종언을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에서 많은 사회정책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전형인 사민주의 복지체제를 뒷받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예산 지출은 1997-1998년과 2000-2001년을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감소했다 (Taylor-Gooby, 2004a). 스웨덴의 경우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행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규모는 동기간 동안 1.96%에서 1.09%로 무려 45.1%나 감소했다. 반면 아동양육과 관련된 정책프로그램의 급여수준과 자격 등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uvander, Ferrarini, and Thalberg, 2005).

아동양육과 관련된 복지예산의 확대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사회의 가장 큰 전환이라고 지칭되는 '점증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Crompton, 1999, Smith 2001 재인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영역이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서 사적영역인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왜

1) 본 논문은 2006년 춘계사회복지학회에서 발표 예정인 논문 중 지방정부부분을 보완하고 분석내용을 수정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나하면 가족원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간주되는 남성노동자에게 사회적 위험은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공적영역)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만, 가족 내 돌봄의 주 담당자였던 여성노동자에게 사회적 위험은 돌봄의 책무로 인해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여성, 특히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사회적 위험은 공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실업, 질병, 노령 등과 함께 사적영역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을 포괄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02년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여성의 50.3%가 육아부담과 가사부담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2004). 특히 어린자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60.7%에 이르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필연적으로 사적영역(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재생산 부문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Smith, 2001), 한국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렇듯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서구복지국가가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돌봄 과제는 복지재편의 핵심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자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가족양립정책은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와 아동보육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22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을 중심으로 OECD 22개국을 비교·분석하는 이유는 복지체제 재편의 핵심적 과제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제도화된 대응방안이 일-가족양립정책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 등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대응은 일-가족양립 문제를 넘어 복지국가의 주요한 사회적 과제인 출산력, 고령화, 빈곤완화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Ferrarini, 2003; Sleebos, 2003). 즉, 신사회위험²⁾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정책대응을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 비교해봄으로써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의 주체를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남성으로 확대해 OECD 국가들의 보편적 생계부양과 돌봄의 실현정도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금노동을 수행할 권리(노동권)와 아동을 돌볼 권리(부모권)가 성별분리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의 배타적 권리와 책임이 아닌 성 통합적 권리와 책임이라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의 돌봄 책

2) 일반적으로 유럽사회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같이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문제를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으로 인식하고 있다 (Taylor-Gooby, 2004b). 그러나 스웨덴과 덴마크와 같은 노르딕국가들에서는 돌봄과 관련된 사회위험에 대응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노르딕 국가들에서 신사회위험은 저학력과 고령의 실업자, 이민자 집단 등이 고용과 서비스전달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상을 신신사회위험(new new social risk)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돌봄의 문제는 구신사회위험(old new social risk)으로 간주되고 있다 (Timonen, 2004). 본 연구에서는 신사회위험을 비노르딕 유럽 국가들과 같이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과 관련된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임을 면제해 주지 않듯이,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또한 남성의 돌봄 책임을 면제해줄 합리적 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양육관련휴가(부모휴가)와 아동보육 지원과 관련해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municip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province, state government)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일-가족양립 지원에 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가족양립을 둘러싼 쟁점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일-가족양립정책이란 노동하는 주체인 부·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가족화시키는 부모권 보장과 상품화·탈가족화시키는 노동권 보장의 양립문제이기 때문이다 (윤홍식, 2005).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유형화의 방법으로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이어서 일-가족양립 지원 수준을 준거로 OECD 22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결론 및 정책함의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한 비교분석 결과가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함의에 대해 국가적 차원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리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이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으로써 일-가족양립정책을 모두 포괄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에 근거한 비교분석은 신사회위험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대응을 비교·검토하는 유용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가족양립정책을 둘러싼 쟁점: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복지국가 재편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이 핵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복지국가 위기의 출발이 현상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재정압박에 기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남성생계부양자를 전제한 전통적 복지체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대표되는 후기산업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가구는 남성생계부양자가구에서 2인 생계부양자가구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전통적 복지체제는 사회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에 장애가 되고 있다. 즉, 테일러-구비(Taylor-Goody, 2004b)의 지적과 같이 일-가족양립정책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복지체제의 주요한 대응방식이다. 더불어 일-가족양립과제가 적절히 지원되지 않았을 때 저출산, 빈곤, 불평등의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인 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은 2인 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sping-Andersen, 2002, Taylor-Gooby, 2004b).

일-가족양립정책이란 노동권(임금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과 부모권(아동을 돌볼 수 있는 권리)이 노동하는 주체인 부·모의 관점에서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권과 부모권의 보장과 통합의 과제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기능인 탈상품화를 통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인 일-가족양립의 수준은 탈상품화를 넘어, 상품화, 가족화, 탈가족화라는 관점이 함께 논의될 때 비로소 적합한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윤홍식(2005: 310-1)의 지적과 같이 노동권과 부모권의 보장과 관련된 가족정책은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이다. 에스핑-앤더슨³⁾(Esping-Andersen, 1990: 46)의 지적처럼 진정한 탈상품화는 임금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가족화)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탈상품화)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OECD 22개국 비교분석의 주요한 준거인 일-가족양립정책의 핵심적 개념(노동권과 부모권)의 전제가 되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더불어 이장 마지막에는 부모권과 노동권의 양립정책(일-가족양립정책)을 젠더역할 통합의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1) 부모권 : 탈상품화와 가족화

부모휴가는 상품화되어있는 부·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시켜 가족 내에서 자녀(들)를 돌볼 수 있게 부·모의 노동력을 가족화(familialization)시키는 정책이다. 부·모의 부모권 보장은 이처럼 탈상품화와 가족화라는 두 가지 이론적 논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탈상품화의 개념의 상당 부분은 에스핑-앤더슨의 개념정의에 의존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1990: 37)은 탈상품화를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탈상품화 개념을 부·모의 부모권 보장과 연관 지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주요한 문제에 직면한다. 첫 번째는 탈상품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에스핑-앤더슨에 따르면 탈상품화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위로써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상품화의 주체가 개인인지, 가족인지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에서 개인은 임금노동자를 지칭하고 가족은 임금노동자의 피부양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남성생계부양자이며, 가족은 남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로서 여성과 아동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상품화의 주체로서 개인과 가족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탈상품화는 여성 개인의 과제가 아닌 가족의 과제가 되며, 이때 여성 개인의 이해와 가족의 이해는 일치된

3) 에스핑-앤더슨(1990)은 진정한 탈상품화를 언급하면서 가족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스핑-앤더슨의 진정한 탈상품화의 개념에 가족화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저자가 탈상품화로 인해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교육, 가족책임, 자녀양육 등 다양한 일을 중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개념임을 밝히둔다.

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단위로서 가족의 이해와 개인, 특히 여성의 이해는 많은 경우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은 상당부분 개인으로서 여성의 이해를 남성가부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가족의 이해에 종속시켰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에스핑-앤더슨은 남성생계부양자(개인)의 이해와 단위로서 가족의 이해가 동치한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답론을 답습하고 있다⁴⁾. 그러므로 젠더관점에서 탈상품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탈상품화의 주체로 남성과 여성을 독립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부·모의 부모권을 지원하는 부모휴가를 통해 탈상품화를 이해할 때 탈상품화의 주체는 명백히 개별권리를 가진 여성과 남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휴가가 부모 중 누가 이용해도 관계 없는 가족권리로 이해될 때 대부분의 이용자는 여성이 되며, 이는 결국 공적·사적영역의 젠더불평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Smith, 2001).

둘째, 탈상품화는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다른 개념과 병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탈상품화는 가족화와 병립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개념이 된다. 에스핑-앤더슨(1990: 46)은 탈상품화 정책들을 언급하면서 임금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책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한 탈상품화(truly de-commodification)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 탈상품화가 필요한가라는 원론적 문제제기에 대해 에스핑-앤더슨은 가족 내 아동 돌봄, 가족책임, 재교육, 여가 등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모가 가족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노동력의 가족화를 동반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를 단순히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탈상품화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는 단순히 임금노동을 중단하고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동적 의미로써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등의 활동(노동)을 하기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레리아(Leria, 2002: 40)도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볼 때 임금소득을 보존 받는다면 탈상품화와 가족화가 함께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했을 때 부모휴가로 대표되는 부모권 지원정책은 부·모의 노동력을 가족화·탈상품화시키는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 마르크스가 '노동력의 가치는 성인(남성)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 뿐 아니라, 그의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개인을 가족이라는 단위에 통합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Barrett, 2005: 200).

2) 탈가족화와 상품화⁵⁾: 노동권

아동양육의 사회화는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 정책이다. 양육의 사회화는 가족(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양육의무의 일부⁶⁾를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시킴으로써 부·모의 노동력을 상품화(commodification)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다. 물론 바렛(2005: 345)의 지적과 같이 남성 노동력의 상품화가 양육책임 때문에 제약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남성노동력의 상품화가 아동양육의 탈가족화를 전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성노동력의 상품화가 상수로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은 여성이 가족 내에서 재생산 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 가능한 것이다. 반면 일-가족양립의 주체를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2인 생계부양자가구로서 부·모 모두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 근거한다면 남성노동력의 상품화 또한 아동양육의 일정부분을 사회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노동에 대한 남성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논증되고 있다 (Hass, 1992; Leria, 2002).

아동보육제도는 이처럼 부·모의 노동력을 탈가족화·상품화시켜 부·모의 노동권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탈가족화는 탈상품화와 달리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류논의에서 에스핑-앤더슨의 개념을 많은 사용하지만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은 많은 모호성을 내재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은 탈가족화를 서로 미묘한 차이를 내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먼저 탈가족화란 가구의 복지와 돌봄의 책임·부담이 시장 또는 국가의 복지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sping-Andersen, 1999: 51). 이어서 같은 저작, 같은 쪽에서 다시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와 평행(parallels)되는 개념으로 언급하면서 탈가족화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전적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올로프(Orloff)의 개념을 인용한다. 따라서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사회정책(또는 시장)을 통해 여성의 돌봄 책임이 완화되어 여성이 독립적으로 상품화되거나 또는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에스핑-앤더슨이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와 병행되는 개념이라고 적시한 부분이다. 탈상품화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탈가족화는 자신의 노동력을 가족화(가족을 돌보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다시 에스핑-앤더슨의 (진정한) 탈상품화 정책의 개념을 탈가족화 정책에 적용한다면, 진정한 탈가족화(truly de-familialization)는 가족 내에서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하거나, 여가,

5) 상품화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탈상품화에 전제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임금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sping-Andersen, 1990; Leria, 2002).

6) 여기서 아동양육 의무의 일부를 탈가족화시킨다고 적시한 것은 공적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돌본다고 해도, 보육시설이용시간이후 등과 같은 아동양육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돌봄을 중단해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여기서는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보살핌을 받는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탈가족화·상품화와 관련된 다른 쟁점은 탈가족화가 개인(특히 모) 노동력 상품화의 전제라는 것이다. 올로프(Orloff, 1993)에 따르면 탈가족화는 여성노동력의 상품화의 전제라고 주장하고 에스핑-앤더슨(1999: 51)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탈가족화가 상품화에 선행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역사적으로 중요한 모순에 직면한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는 시간적으로 탈가족화에 선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 덴마크 등 사민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아동양육의 탈가족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선행된 이후에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Nyberg, 2004; Lewis, 1993).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탈가족화가 상품화의 사전적 조건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즉, 탈가족화와 상품화를 선후의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동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탈가족화란 가족원(주로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의 완화를 통해 부·모가 임금노동, 여가, 재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탈가족화를 가족정책의 노동권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탈가족화 정책은 부·모의 노동력을 탈가족화시켜 상품화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탈가족화와 상품화의 주체는 앞서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논의하면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동하는 주체인 개별시민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3) 일-가족양립정책의 젠더통합의 과제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 지원 정책인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이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시킴으로써 일-가족양립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일과 가족생활이 양립된다는 것이 곧 생계부양과 돌봄의 과제가 남성과 여성 간에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일-가족양립 정책의 수준이 반드시 보편적 생계부양과 돌봄의 수준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여성친화적인 정

7) 데일리(Daly, 2000)도 아동을 돌보는 일이 부모에서 사회로 이전되는 것을 탈가족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레리아(Leria, 2002)는 직접적으로 탈가족화를 가족 밖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8)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써의 공적보육의 위상은 90년대 이후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모의 고용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아동보육시설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사회에서 공적보육정책이 부·모(특히 여성)의 노동력을 상품화 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젠더평등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제3의 목적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Nyberg, 2000, Nyberg, 2004 재인용).

책의 수준이 높다고 간주되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도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그러므로 노동권과 부모권의 과제는 정책의 지원수준과 함께 노동권과 부모권이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과 관련해 남녀간 역할 공유의 문제가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영역은 공적아동보육과 같은 탈가족화·상품화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족화·탈상품화 정책인 부모휴가 등에서 집중되어 나타난다 (Bergqvist and Jungar, 2000).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돌보아질(탈가족화) 때 부·모의 역할 공유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휴가는 부·모 중 누군가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남녀간 역할 공유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실제로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통한 부모권 보장 정책이 성 분리적일 때 일-가족양립은 순차적 또는 차이에 근거한 양립형태로 수렴 될 수밖에 없다¹⁰⁾ (윤홍식, 2005). 성 분리에 근거한 두 가지 양립은 여성억압의 주요한 측면인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존치시킴으로써 결국 노동권과 부모권이 통합되지 못하는 윌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에 빠져 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편적 일-가족양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라는 역할이 공유되어야한다. 즉, 부모권 보장과 관련 정책이 보편적 일-가족양립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순차적·차이에 근거한 양립을 지향하는가는 구체적 정책이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될 것이다.

9) 스웨덴에서는 전체 부모휴가의 91.0%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99.0%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 (Bruning and Platenga, 1999).

10) 순차적 일-가족양립은 여성이 양육자와 생계부양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암묵적으로 돌봄의 주제로 여성을 전제한 양립정책이다 (윤홍식, 2005: 296-303). 예를 들어, 부모휴가는 명목적으로 성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대부분의 부모휴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 양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순차적 양립에서 양립의 주체는 여성으로 제한되고 있다. 차이에 근거한 일-가족양립은 일-가족양립이 성별분업에 근거한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성은 돌봄을 책임지고 남성은 생계부양을 담당함으로써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에서의 일-가족양립을 지향하는 형태이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방법 :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

본 논문은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22개국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국가로부터 출발해 이들 국가들을 유사성(similarity)의 특성으로 묶어내고 비상사성(dissimilarity)적 요소를 분리시키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방법 중 병합적(agglomerative) 방법을 사용하였다(김기영·전명식, 1994). 22개별국가의 관찰벡터, $X_i = (X_{i1}, X_{i2}, X_{i3}, \dots, X_{ip})$ 와 $X_j = (X_{j1}, X_{j2}, X_{j3}, \dots, X_{jp})$ 간의 거리($d_{ij} = d(X_i, X_j)$)를 측정해, 모든 국가사례에 대해 얻은 $N \times N$ 의 거리행렬(D)을 통해 가까운 국가끼리 묶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¹¹⁾. 이를 위해 사용된 상이지수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OECD 22개국을 유형화한 다음 2차원 평면상에서 사례 간 근접성을 높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반복적 절차를 통해 최적의 해를 구하는 다차원척도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2) 분석자료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통해 OECD 국가들의 일-가족양립(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지원 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인 OECD 22개국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미국, 한국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보면 ① 모스와 디븐(Moss and Deven, 1999)이 편집한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보고서를 통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5개국의 부모휴가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② OECD(2002; 2003a; 2004; 2005)의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보고서에서는 호

11) 그러나 군집분석은 어떠한 군집분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군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홍두승(1988)에 따르면 군집분석의 도구적 목적의 유용성을 판단했을 때 분석결과의 유용성은 인정된다.

책의 수준이 높다고 간주되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도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그러므로 노동권과 부모권의 과제는 정책의 지원수준과 함께 노동권과 부모권이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과 관련해 남녀간 역할 공유의 문제가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영역은 공적아동보육과 같은 탈가족화·상품화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족화·탈상품화 정책인 부모휴가 등에서 집중되어 나타난다 (Bergqvist and Jungar, 2000).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돌보아질(탈가족화) 때 부·모의 역할 공유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휴가는 부·모 중 누군가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남녀간 역할 공유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실제로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통한 부모권 보장 정책이 성 분리적일 때 일-가족양립은 순차적 또는 차이에 근거한 양립형태로 수렴 될 수밖에 없다¹⁰⁾ (윤홍식, 2005). 성 분리에 근거한 두 가지 양립은 여성억압의 주요한 측면인 공·사적영역의 분리를 존치시킴으로써 결국 노동권과 부모권이 통합되지 못하는 월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에 빠져 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편적 일-가족양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라는 역할이 공유되어야 한다. 즉, 부모권 보장과 관련 정책이 보편적 일-가족양립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순차적·차이에 근거한 양립을 지향하는가는 구체적 정책이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될 것이다.

9) 스웨덴에서는 전체 부모휴가의 91.0%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99.0%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 (Bruning and Platenga, 1999).

10) 순차적 일-가족양립은 여성이 양육자와 생계부양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암묵적으로 돌봄의 주체로 여성을 전제한 양립정책이다 (윤홍식, 2005: 296-303). 예를 들어, 부모휴가는 명목적으로 성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대부분의 부모휴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 양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순차적 양립에서 양립의 주체는 여성으로 제한되고 있다. 차이에 근거한 일-가족양립은 일-가족양립이 성별분업에 근거한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성은 돌봄을 책임지고 남성은 생계부양을 담당함으로써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에서의 일-가족양립을 지향하는 형태이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방법 :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

본 논문은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22개국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국가로부터 출발해 이들 국가들을 유사성(similarity)의 특성으로 묶어내고 비상사성(dissimilarity)적 요소를 분리시키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방법 중 병합적(agglomerative) 방법을 사용하였다(김기영·전명식, 1994). 22개별국가의 관찰벡터, $X_i = (X_{i1}, X_{i2}, X_{i3}, \dots, X_{ip})$ 와 $X_j = (X_{j1}, X_{j2}, X_{j3}, \dots, X_{jp})$ 간의 거리($d_{ij} = d(X_i, X_j)$)를 측정해, 모든 국가사례에 대해 얻은 $N \times N$ 의 거리행렬(D)을 통해 가까운 국가끼리 묶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¹¹⁾. 이를 위해 사용된 상이지수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OECD 22개국을 유형화한 다음 2차원 평면상에서 사례 간 근접성을 높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반복적 절차를 통해 최적의 해를 구하는 다차원척도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2) 분석자료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통해 OECD 국가들의 일-가족양립(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지원 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인 OECD 22개국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미국, 한국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보면 ① 모스와 디븐(Moss and Deven, 1999)이 편집한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보고서를 통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5개국의 부모휴가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② OECD(2002; 2003a; 2004; 2005)의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보고서에서는 호

11) 그러나 군집분석은 어떠한 군집분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군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홍두승(1988)에 따르면 군집분석의 도구적 목적의 유용성을 판단했을 때 분석결과의 유용성은 인정된다.

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13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③ 2004년 4월 19-2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부모휴가와 아동양육에 관한 심포지엄(Peer Review)자료에서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7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양육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다. ④ 스미스(Smith, 2001)의 논문을 통해서 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13개국의 부모휴가에 관한 정보를 인용했다. 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urg Income Study: LIS)의 가족정책자료(Family Study Database, Version 2, 2003)자료를 통해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등 11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⑥ 브레드쇼와 핀치(Bradshaw and Finch, 2002)의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s in 22 Countries' 보고서로부터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20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에 관한 자료를 인용했다. ⑦ 한국에 관한 정보는 관련부처(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취합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OECD 22개국을 유형화 했는데, 중복되는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고, 발간연도가 같을 경우 해당국가에서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사용된 변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이 OECD 국가들의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일-가족양립) 수준을 모두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정책은 부모휴가와 아동보육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은 해당 국가의 일-가족양립지원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변수로 판단된다 (Kreimer, 2004; Sutela, 2004; Nyberg, 2004). 부모휴가가 부·모의 부모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휴가를 통해 부·모의 탈상품화와 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휴가가 부모권을 지원하는 정도는 각국의 부모휴가가 가지는 구체적인 제도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아일랜드, 호주와 같이 부모휴가가 제도화 되어 있지만 무급이라면 이들 국가의 부모휴가는 유급부모휴가를 제도화한 국가보다 부모권 지원 수준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호주의 경우 무급부모휴가를 48주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덴마크는 유급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단지 10주 만을 보장해주고 있다면 어떤 제도가 부·모의 부모권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적보육도 부모휴가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3-6세 보육율은 95%로 포르투갈의 75%보다 20%p 높지만, 0-2세 보육율은 포르투갈이 12%로, 이탈리아의 6%보다 두 배나 높다. 즉, 특정 국가는 특정한 부분에서 부·모의 노동력을 상품화·탈가족화하는데 적절하게 설계되어있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있다. 또한 노동권과 부모권의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각각의 요소가 기여하는 비중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에서는 각국가간의 상이성과 비상이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들 개별 변수들이 어떠한 비중으로 역할을 하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즉,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에서 각각의 변수들은 동일한 비중으로 분석 되어진다¹²⁾.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부모휴가의 권리성격: 부모휴가가 가족권리인지, 개인의 권리인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족권리로 부여하는 경우는 부모휴가의 사용을 부·모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경우이고, 개인권리로 부여하는 경우는 부·모 각각의 배타적 사용권을 제도화한 경우다. 부모휴가의 일부를 특정한 부·모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는 가족권리와 개별권리가 혼합된 경우로 간주하였다. 가족권리로 부여할 경우 1점, 혼합권리의 경우 2점, 개별권리의 경우 3점을 부여하였다. ② 급여대체수준: 부모휴가기간 중 임금소득이 대체되는 비율로 측정하였고, 정률인 경우 임금소득수준과 비례하여 비율을 결정하였다. ③ 부모휴가기간: 공식적으로 부모휴가를 보장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④ 부모휴가의 유연성: 두 가지로 측정하였는데 시간제 이용이 가능할 경우 1점, 불가능할 경우 0점, 부모휴가 기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1점, 불가능할 경우 0점으로 계상하고 시간제 사용과 분절사용 점수를 합산했다. ⑤ 자격조건: 부모휴가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지 아니면 고용을 전제하는지에 따라 고용을 전제하는 경우 0점, 자격조건이 없는 경우는 1점을 부여했다. ⑥ 아버지할당: 특정기간을 부에게 할당하고 있으면 1점,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했다. ⑦ 0-2세 보육비율: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비율로 측정했다. ⑧ 3-4세 보육비율: 3세부터 5세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비율로 측정했다. ⑨ 국내총생산(GDP)대비 보육예산: GDP대비 보육예산지출의 비율로 정의했다. ⑩ 순보육비용: 부·모 모두의 임금소득이 남녀노동자의 평균임금소득에 해당할 경우에 지출되는 순 보육비용을 실질구매력(PPP)기준 2001년 기준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하였다.

4) 분석의 흐름

본 연구의 분석은 2단계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2개국을 집단화하였다. 1단계에서 사용한 변수는 부모휴가의 급여대체수준, 기간, 유연성, 자격조건, 0-2세, 3-4세 보육비율, GDP대비 지출, 순보육비용이다. 2단계에서는 젠더역할 공유 문제를 추가하기 위해 부모휴가의 권리성격과 아버지할당제 유무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2단계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노동권 및 부모권 지원수준에 젠더평등의 문제를 추가해 OECD 22개국을 유형화 하였다.

12) 현실세계에서 개별 변수들이 서로 다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의 방법론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관적으로 각제도의 특성을 지수화해서 국가간의 차이를 유형화하는 방법보다는 각 사례 간의 상이성과 비상이성을 근거로 사례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군집과 다차원척도분석이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4. 분석결과

1) OECD 22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

(1) 부모휴가 (육아휴직)

스위스를 제외하고 OECD 21개국은 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부모휴가의 권리 성격을 보면 크게 개인권리, 혼합권리, 가족권리로 구분된다. 개인권리는 부모휴가의 권리가 부·모에게 각각 주어져, 부여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개인권리의 장점은 부·모 각각이 부모휴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모휴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모 각각이 부모휴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¹³⁾ (Smith, 2001). 혼합권리는 가족과 개인권리가 혼합된 방식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모휴가의 일정기간은 부·모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특정기간은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이용하도록 제정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등은 가족권리 차원에서 부모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가족권리로 부모휴가를 보장했을 경우 부·모 중 누구나 부모휴가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여성이 부모휴가를 이용하고 있다 (Bruning and Plantenga, 1999).

급여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임금의 100%를 보존하고 있는 노르웨이부터 무급인 그리스, 네덜란드 등이 있다. 또한 정육의 급여를 제공하는 독일, 벨기에 등의 경우 급여수준은 대체로 평균임금의 20%내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임금에 비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보존을 해주고 있다. 부모휴가의 기간은 미국이 가장 짧은 12주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가장 긴 156주를 보장해 주고 있다. 부모휴가 사용의 유연성여부는 부모휴가 기간 중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는지와 부모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점검해 보았다. 그리스,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시간제와 분할사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부·모가 일-가족양립 과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덴마크, 미국 등 6개국은 시간제와 분할사용 중 한 가지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뉴질

13) 그러나 현실에서 개인권리로 부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그리스,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에서 부모휴가의 대부분은 여성이 이용하고 있으며, 남성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랜드, 캐나다, 한국 등 5개국은 시간제와 분할사용이 불가능하다. 자격조건은 제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모휴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 4주(독일)에서 12개월(그리스, 네덜란드 등)의 고용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14개국이 여기에 속한다.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부·모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부모휴가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모휴가 사용자의 고용조건은 없으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반드시 고용상태에 있어야한다 (Smith, 2001).

마지막으로 아버지할당제는 부의 부모휴가 참여를 통해 가족 내 돌봄 과제를 부·모가 함께 나누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아버지할당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태리, 핀란드 6개국에서 제도화 되어 있다. 6개국의 제도화 방식은 부모휴가기간 중 일정 기간을 부에게 할당하는 할당 방식과 부모휴가 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을 부가 사용할 경우 부모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인센티브방식으로 구분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부모휴가 기간 중 각각 4주, 8주의 아버지할당기간을 제도화하고 있다. 인센티브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이태리, 핀란드, 덴마크 4개국이다. 이들 4개국은 부모휴가 기간 중 일정기간을 부가 사용할 경우 각각 6개월, 1개월, 1~12일, 2주간 부모휴가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리하면 부모휴가와 부·모의 부모권 지원 수준은 제도의 다양한 특성을 통해 결정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휴가가 개인권리로 주어지고, 급여수준이 높으며, 기간은 1년 내외고, 사용의 유연성이 보장되며,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아버지할당제를 실시할 때 부모권 지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Leria, 2002; Smith, 2001).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부모휴가의 권리성격이 혼합권리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스웨덴 여성의 부모휴가 이용율은 각각 100%와 99%에 이르며, 남성참여율은 각각 69%, 46%에 이르고 있다 (Bruning and Plantenga, 1999). 반면 덴마크의 경우 같은 사민주의 국가라고 분류되지만 급여수준, 유연성, 아버지할당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며, 부·모의 이용율은 각각 3%와 33%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연성만이 부모휴가의 높은 이용율을 위한 조건에 충족하는데 모의 이용율은 96%에 이르지만 부의 이용율은 0%에 가깝다.

(2) 아동보육

① 0-2세과 3-5세 아동보육: <표 2>는 아동보육시설 이용실태, 정부지원 수준, 부모의 비용부담 등을 통해 OECD 22개국의 아동보육실태를 개괄한 것이다. 먼저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을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64%, 65%로 OECD 22국 중 가장 높다. 이어서 벨기에 41%, 뉴질랜드 40%, 프랑스 39%, 노르웨이 3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25%에 그쳐 보수주의 국가인 프랑스와 자유주의 국가인 호주 등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핀란드의 영아보육정책이 시설이용보다는 양육휴가(childcare leave) 정책으로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OECD, 2005, Sutela, 2004). 그리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 캐나다, 한국은 시설이용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아동의 초기양육자로 누구를 상정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젠더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

[표 1] OECD 22개국의 부모휴가(Parental leave) 현황

국가	① 권리성적	② 급여수준	③ 기간*	④ 유연성		⑤ 자격조건 (고용조건)	⑥ 부 할당
				시간제사용	분할사용		
그리스	개인	무급	15주	가능	가능	고용(12개월)	-
네덜란드①	개인	무급	12주	가능	가능	고용(12개월)	-
노르웨이②	개인+가족	100%	42주	가능	가능	없음	할당형(4주)
뉴질랜드③	가족	32%	38주	불가	불가	고용(12개월)	-
덴마크④	가족	100%	10주	불가	가능	없음	인센티브형(2주)
독일	가족	20%(정률)	156주	가능	가능	고용(4주)	-
미국⑤	개인	무급	12주	불가	가능	고용	-
벨기에	개인	22%(정률)	13주	가능	가능	고용(12개월)	-
스웨덴⑥	개인+가족	71%	69주	가능	가능	없음	할당형(8주)
스위스	-	-	-	-	-	-	-
스페인⑦	개인	무급	156주	가능	불가	없음	-
아일랜드⑧	개인+가족	무급	22주	가능	가능	고용	-
영국	개인	무급	13주	불가	가능	고용	-
오스트리아⑨	개인	13%(정률)	104주	가능	가능	없음	인센티브형(6개월)
이탈리아⑩	가족	30%	43주	가능	가능	없음	인센티브형(1개월)
일본⑪	가족	30%	44주	가능	불가	고용	-
캐나다	가족	52%	35주	불가	불가	고용	-
포르투갈	개인	무급	13주	불가	불가	고용(12개월)	-
프랑스	가족	20%(정률)	156주	가능	불가	고용(12개월)	-
핀란드⑫	개인+가족	65%	32주	가능	가능	고용(6개월)	인센티브형 (1~12일)
한국⑬	가족	23%	40주	불가	불가	고용	-
호주⑭	가족	무급	48주	불가	불가	고용	-

⑤ 네덜란드: 공무원의 경우 75%의 임금대체 (Bradshaw and Finch 2002).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아버지 할당제를 운용했으나, 2001년 2주간의 아버지 할당제(father quota)를 폐지되었다 (OECD, 2002: 129). ⑥ 노르웨이: 42주를 사용할 경우 100%임금대체, 52주를 사용할 경우 80%임금대체(Bradshaw and Finch 2002). ⑦ 뉴질랜드: 2001년부터 100% 임금이 보존되는 12주간의 부모휴가와 무급인 26주의 부모휴가로 구성되어 있다. 총 부모휴가기간의 합은 38주이다 (OECD, 2004). 31.6%는 $(12주 * 100) + (26 * 0)$ 을 전체 부모휴가 기간인 38주로 나눈 값이다. ⑧ 덴마크: 2002년 아버지할당제의 폐지로 부모휴가 권리의 성격이 가족+개인권리에서 가족권리로 변화되었다 (OECD, 2003a). 그러나 아버지할당제가 폐지된 이유와 구체적인 설명 없이 2주간의 아버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한 LIS가족자료에 의하면 부모휴가 기간 중 부가 부모휴가를 2주간 사용하면 부모휴가기간이 10주에서 12주로 2주간 연장된다 (LIS, 2003). 또한 OECD(2002)자료에 따르면 많은 부모휴가 이용자가 부모휴가 기간 중 급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LIS(2003)의 자료에 따르면 80%가 임금수준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덴마크의 소득대체율을 100%라고 기록했다. ⑨ 미국: 공식명칭은 가족휴가(family leave)이다. 이 휴가에는 모성, 부성, 부모, 간호휴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휴가가 모두 12주 휴가를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12주를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Bradshaw and Finch 2002). ⑩ 스웨덴: 부모휴가는 처음 390일(56주)은 80%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반면 나머지 90일(13주)은 정률로 급여가 제공된다. 정률로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은 평균근로소득의 9%정도에 해당 한다 (OECD, 2005). 71.1%는 $(390일 * 80) + (90 * 0.09)$ 을 전체 부모휴가 기간인 450일로 나눈 값이다. ⑪ 스페인: 부모휴가 권리의 성격이 1999년부터 가족권리에서 개인권리로 변화 (Moss and Deven, 1999). ⑫ 아일랜드: 모성휴가 후 부모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8주간의 무급부모휴가와 8주간의 휴가 이후 각각의 부모에게 주어지는 14주간의 무급부모휴가가 있다 (OECD, 2003a). ⑬ 오스트리아: 부모휴가의 권리 성격은 2000년을 전후로 아버지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를 통해 가족권리에서 개인권리로 변화하였을. 1999년 개정으로 부모휴가를 2회(최소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쓸 수 있게 했을 (Kreimer, 2004). 고용을 전제한 자격조건은 2002년 이후 폐지되었으나 가족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할당제라는 명시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부모휴가기간의 일정기간 이상을 부가 사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유급부모휴가가 6개월간 연장된다 (Moss and Deven, 1999: 311). ⑭ 이탈리아: 만약 부가 부모휴가를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휴가 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 (Moss and Deven, 1999; Bradshaw and Finch 2002). ⑮ 일본: 44주간의 휴가 기간동안 이전 임금의 30%를 보존해주고, 휴가에서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동안 일을 계속하면 이전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임금(휴가기간 동안 매월에 해당하는)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준다 (OECD, 2003a). 여기서는 휴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소득보존 비율만을 계산하였다. ⑯ 핀란드: 2003년부터 부가 부모휴가를 12일(주중) 사용할 경우 부성휴가가 1~12일 연장될 수 있다 (Sutela, 2004). ⑰ 한국: (직업군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이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면 육아휴직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5개월, 45주 정도가 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 정률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임금 1,750,421원(통계청, 2005)의 대략 22.9% 정도에 해당한다. 2006년 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취업 의사를 가진 대학졸업 예정자와 처음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구직자들도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경제, 2006. 3. 9). ⑱ 호주: 법률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없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간에 합의된 유급 부성휴가와 부모휴가가 있다 (OECD, 2002). *부모휴가 기간이 개월로 표시된 경우 1개월을 4.3주로 계산해 주단위로 전환했을.

가의 경우 아동에 대한 초기양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강제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율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 젠더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의 경우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슬리보스(Sleeboos, 2003)가 지적한바와 같이 0~2세 아동양육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탈가족화)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상품화)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의와 연관관상에서 양육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 출산-양육과 경제활동 참여가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닌 양립가능한 문제로 인식됨으로써 해당 국가의 출산력 수준의 재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캐슬러스(Castles, 2003)는 0~2세 아동에 대한 공적보육시설 이용율은 출산력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율은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처럼 국가들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등은 3~5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이 90%를 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1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이 5%에 불과한 스위스와 스페인이 3-5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은 각각 95%와 91%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그리스, 캐나다, 한국 등도 3-5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은 각각 46%, 23%,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0-2세 보육율과 달리 3-5세에 대한 보육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조기)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0-2세 보육율의 경우 보육시설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65.0%)과 가장 낮은 아일랜드(1.0%)의 차이가 무려 64.0%포인트인데 반해 3-5세의 보육율의 차이는 15.0%포인트에 불과하다.

【표 2】 OECD 22개국의 아동보육: 이용비율, 정부지원, 및 부·모 부담

	보육시설등록율*		GDP대비 아동보육지원 지출비율**	순보육비 부담액
	0-2세	3-5세		
그리스㉑	3(00)	46(00)	0.4	296
네덜란드	19(99)	90+(99)	0.6	565
노르웨이㉒	37(00)	78(00)	1.6	316
뉴질랜드㉓	40(00)	98(00)	0.3	575
덴마크㉔	64(99)	91(99)	2.7	257
독일	9(00)	54(99)	0.8	347
미국	16(99)	54(99)	0.5	997
벨기에㉕	41(99)	75(00)	0.5	319
스웨덴	65(02)	90(02)	1.9	233
스위스㉖	5(00)	95(00)	0.3	515
스페인㉗	5(01)	91(01)	0.4	310
아일랜드㉘	1(00)	50(00)	0.5	578
영국	15(99)	42(99)	0.5	593
오스트리아㉙	13(01)	86(01)	0.9	179
이태리㉚	9(98)	71(98)	0.3	287
일본㉛	18(01)	89(01)	0.3	356
캐나다	5(98)	23(98)	0.3	499
포르투갈	22(98)	75(98)	0.5	234
프랑스	39(00)	100(00)	1.3	287
핀란드	25(98)	68(98)	1.5	183
한국㉜	6(00)	50(00)	0.1	344
호주㉝	31(99)	47(99)	0.2	524

㉑그리스: 46%는 3-5세 아동의 보육비용임 (Bradshaw and Finch 2002). ㉒노르웨이: 37%는 1-2세, 78%는 2세 이상 (Bradshaw and Finch 2002). ㉓뉴질랜드: 38%는 1-2세 아동의 비율 (Bradshaw and Finch 2002). ㉔덴마크: 64%는 6개월에서 2세 (OECD, 2002). ㉕벨기에: 41%는 3개월에서 2.5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율이고, 75%는 2.5세에서 6세까지 아동의 보육시설이용 비율임 (Bradshaw and Finch 2002). ㉖스위스: 스위스 전국 통계는 자료접근이 불가능한 Ticino 지역의 보육율임. 95%는 4세 아동 (OECD, 2004). 보육비부담은 2004년도 OECD 보고서 109쪽 Chart 4.1.에서 제시된 스위스와 포르투갈의 종일보육료 비율을 계산해 포르투갈의 비용에 곱해서 얻은 값임

다. 보육비부담 1은 1.27배, 보육비부담 2는 2.20배 ④스페인: 91%는 2세 이상 (Bradshaw and Finch 2002). ⑤아일랜드: 1%는 0-3세까지, 50%는 4세 (Bradshaw and Finch 2002). ⑥오스트리아: 13%는 0-3세, 86%는 3-6세 (OECD, 2003a). ⑦일본: 18%는 0-3세, 89%는 3-6세 (OECD, 2003a). ⑧한국자료는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보육비용은 아동이 유치원, 어린이방, 놀이방에 등록된 경우를 산정하였다.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순보육비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대도시 기준 종일제 보육료 244,000원을(유희정·강정희, 2002) 실질구매력 가치를 환산하기 위해 1.46배한 수치에 (2004년 기준),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되는 달러환율 1,035원을 적용 계산하였다. ⑨호주: 31%는 0-3세, 47%는 4세 이상 (OECD, 2002). ⑩이태리의 GDP대비 정부지출자료는 OECD(2003b)보고서에서는 이용가능하지가 않아, 브래드쇼와 핀치(2002)의 보고서 236쪽 평균소득의 이안생계부양자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순위를 참고했다. 이태리의 세후지원수준은 일본과 그리스의 중간에 위치해 GDP 대비 지출비용을 0.3으로 추정했다. * 보육시설이용비용 자료 중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자료는 OECD, 2002, 2003, 2004, 2005 자료를 참고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브래드쇼와 핀치의 2002년 (Bradshaw and Finch 2002) 자료를 참고하였다. **공식보육과 유치원교육에 대한 각국의 GDP대비 예산지출비용 (OECD, 2003b).

② 정부지원과 부모부담: GDP대비 아동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을 보면 덴마크의 GDP대비 지출비용은 2.7%로 OECD 22개국 중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스웨덴(1.9%), 노르웨이(1.6%), 핀란드(1.5%) 순이다. 이렇듯 사민주의 국가들의 보육지원수준이 높은 이유는 보육지원이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중반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보육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잔여주의적 접근에서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전환되었다 (Borchorst, 2002). 또한 정부의 지원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0-2세 아동의 보육시설이용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경우 22개국 중 2위, 스웨덴 1위, 노르웨이 5위, 핀란드 7위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스위스, 이태리, 일본 등 GDP대비 정부예산 지출비용이 0.3%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0.1%로 OECD 22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제외한 부·모의 순보육비 부담수준을 보면 미국이 월 평균 997USD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영국(593USD), 아일랜드(578USD), 뉴질랜드(575USD), 네덜란드(565USD), 캐나다(499USD) 순으로 조사되었다.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부모의 순보육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부모의 보육비부담이 높은 이유는 아동보육을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시장을 통해 아동양육을 탈가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값싼 노동력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sping-Andersen, 1999). 또한 일반적으로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고 간주되는 네덜란드에서 부모의 보육비부담이 높은 이유는 여성의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며, 국가의 아동보육에 대한 역할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의 수준은 높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한 복지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Bussemaker and Kerbergen, 1994). 부모의 보육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육비부담이 낮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국가의 지원수준이 높은 국가들일 수록 부모의 보육비용부담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부모휴가와 아동양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부모휴가, 모성휴가, 부성휴가 등 양육과 관련된 휴가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덴마크의 경우 지방정부가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재원을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S, 2003). 덴마크의 경우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경우 3주차부터 지방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 지방정부가 아동양육휴가와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이유는 지역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아동양육관련 휴가로 대체함으로써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다(Rostgaard, Christoffersen, and Weise, 1999). 실제로 1990년대 중반 덴마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인 1995년 지방정부는 아동양육관련 휴가의 급여수준을 휴가 전 임금의 최대 80%까지 보충해 주었다(Andersen, Appeldorn, and Weise, 1996, Rostgaard et al, 1999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지역내에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자 지방정부의 지원은 축소되었다. 즉, 덴마크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아동양육관련 휴가정책이 아동양육시설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아동양육휴가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3〉은 아동양육서비스 재원 분담에 관련된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자치단체(municip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역정부(provinces)(이하 지방정부라고 통칭함)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재원분담 주체에 따라 OECD국가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이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는 아동양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재정적 분담을 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들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아동양육서비스 재원과 관련해 직접적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양육관련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비용의 대부분을 부모가 분담하는 경우이다. 다만 일부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 지역정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산조사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고, 영국의 경우 4개월부터 3세까지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의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아동양육서비스의 경우 자산조사를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 부모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아동양육서비스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큰 국가는 스웨덴으로 아동양육서비스 관련 재원의 82%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덴마크는 6개월부터 3세까지 아동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모가 지불하는 공식적 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자치단체가 아동양육서비스 비용의 54%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는 46%(지역정부 12%, 자치단체 34%), 노르웨이는 자치단체가 28%를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는 아동양육서비스에 대한 재원 분담비율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정부, 부모, 중앙정부 등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지방정부, 고용주, 부모가 균등하게 재원을 분담하는 재원분담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자발적 의지에 근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 지방정부가 현재와 같이 아동양육관련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51년 국회에서 자치단체가 아동양육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제도화 시킨 이후이다 (Borchorst, 2002). 스웨덴의 경우도 자치단체가 공적보육시설 확대에 소극적인 정책을 일관함으로써 국가적 목표 달성(1991년 전까지 모든 일하는 부모, 학교에 다니는 부모,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공적보육시설 이용자격을 부여하려는 목표)에 실패하자 1995년 법률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제도화했다 (Nyberg, 2004).

이렇듯 아동양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방정부의 자발적 의지에서기보다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재원분담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증대시키려는데 반해 중앙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예를 보면 1993년 시민당 집권이후 부모의 부담 비율에 대한 국가의 지방정부의 대립이 6년간 지속되다가 1999년 부모부담을 3%포인트 늘리는 수준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였다 (Borchorst, 2002). 스웨덴에서도 1990년대 많은 자치단체들이 보육비용을 부모에게 전가하려고하자 중앙정부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의 상한선(a maximum parental fee)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아동양육시설운영 비용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에 관한 중앙정부의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Bergqvist and Nyberg, 2002; 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5). 실제로 아동양육비용이 부모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0%에서 2000년 1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Nyberg, 2004). 정리하면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 견제와 합의 수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아동양육과 양육휴가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위치 지워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지방정부, 자치단체, 주정부, 지역정부의 아동양육서비스 재원 부담 현황

	아동양육(child care)의 재원부담 주체	지원내용
덴마크 (Denmark)	중앙정부,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부모	지방정부는 24주부터 3세까지 아동이 있는 부모에 대해 공식비용의 7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음.
핀란드 (Finland)	중앙정부(27%), 자치단체(municipal government) (54%), 부모	아동을 돌보는 자나 기간에 직접지원 함.
노르웨이 (Norway)	중앙정부(36%), 자치단체(28%), 부모	현금 급여는 사적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스웨덴 (Sweden)	자치단체(82%), 부모(18%)	가족(가정)아동양육의 경우도 아동양육서비스 지원과 같은 구조임.
벨기에 (Belgium)	지방정부, 자치단체, 연방정부, 부모	
프랑스 (France)	중앙(24%), 지역(regional)정부 (12%), 자치단체(34%), 부모	유치원(유아학교, preprimary)의 경우 중앙정부(56%), 자치단체(34%) 부담.
독일 (Germany)	주, 자치단체, 부모	유치원의 경우 주정부(41%), 자치단체(59%)부담.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탁아소 또는 놀이방(playgroups)은 자치단체 부담.	나머지 유아교육기관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33%), 고용주(25%), 부모(42%) 부담. 네덜란드의 목적은 가능하면 자치단체, 고용주, 부모가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임.
캐나다 (Canada)	대부분의 아동양육(교육)서비스 는 사적시장에서 구입.	지역정부마다 차이가 있음. 자산조사를 통한 지원 가능
영국 (the U.K.)	4세 이하 사적기관으로 부터 구입.	4개월에서 3세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Nursery school) 지방정부 부담.
미국 (the U.S.)	대부분 사적기관이용.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아동양육서비스는 연방, 주, 부모가 공동부담. 유치원 등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원부담.

Luxemburg Income Study(2003), Family Policy Database, Version 2. 'Government Mechanisms for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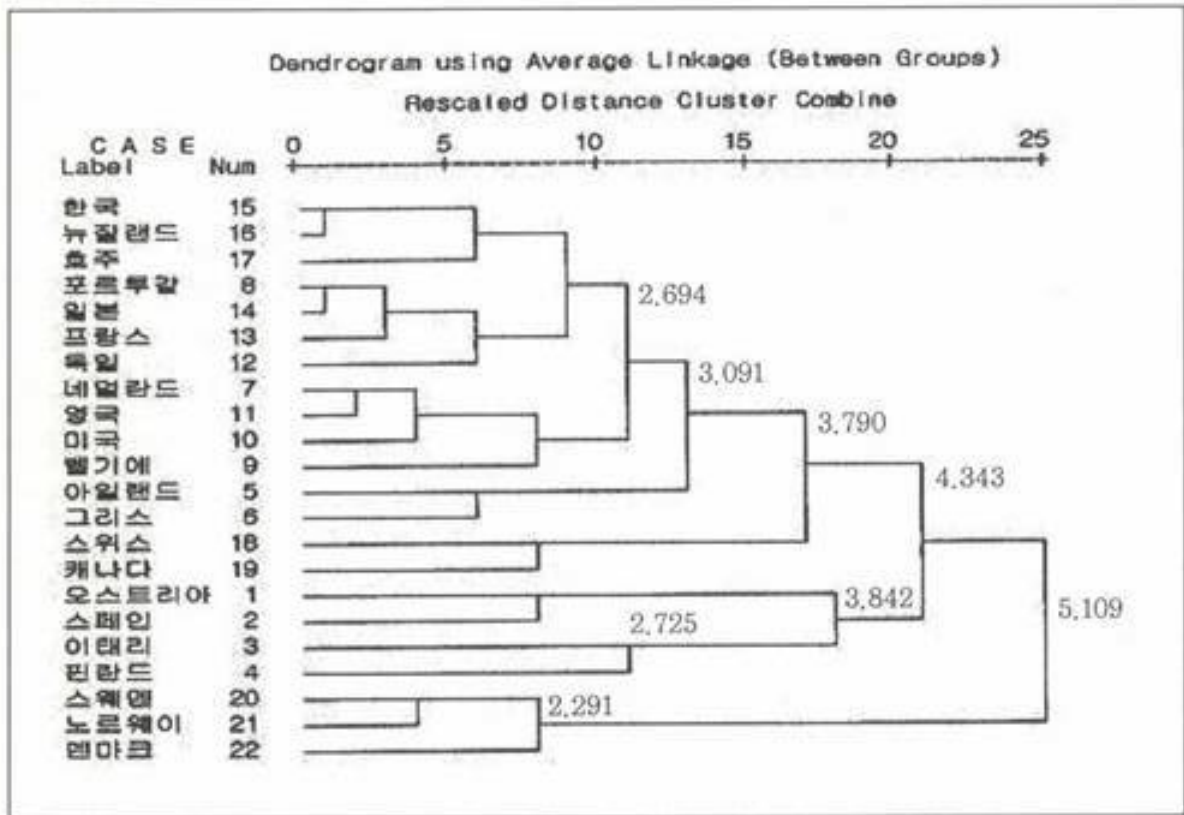
3) 부모권(가족화·탈상품화)과 노동권(탈가족화·상품화) 지원에 따른 분석

[그림 1]은 부모휴가의 급여수준, 기간, 유연성, 자격조건과 노동권 지원과 관련된 변수(0-2세, 3-5세 보육비용, 정부지출, 보육비부담)들을 기준으로 각 국가들에 대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군집계수(cluster coefficient)가 작을 수록 국가간 동질성이 높은 것이고 클수록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의 수는 집락계수 3.1을 기준으로 5개 군집으로 묶었다. 먼저 북유럽3개국과 핀란드와 이태리는 동일한 군집을 구성했으나 나머지 군집들의 구성은 변화했다. 오스트리아는 스페인과 같은 군집을 구성했고, 스위스와 캐나다가 기존의 군집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군집을 구성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군집을 구성했던 영국이 속한 군집과 한국이 속한 군집이 하나의 군집으로 모아졌다. 스위스와 캐나다가 기존의 군집에서 벗어난 이유는 두 국가 모두 0-2세 보육비용이 5%로 매우 낮고, GDP대비 정부예산 지출비용도 0.3%로 매우 낮으며, 부모가 부담해야 할(구매력기준) 월 평균비용도 각각 515USD와 499USD로 높아 노동권 지원을 추가했을 때 기존의 군집에 속해 있던 국가들과 차이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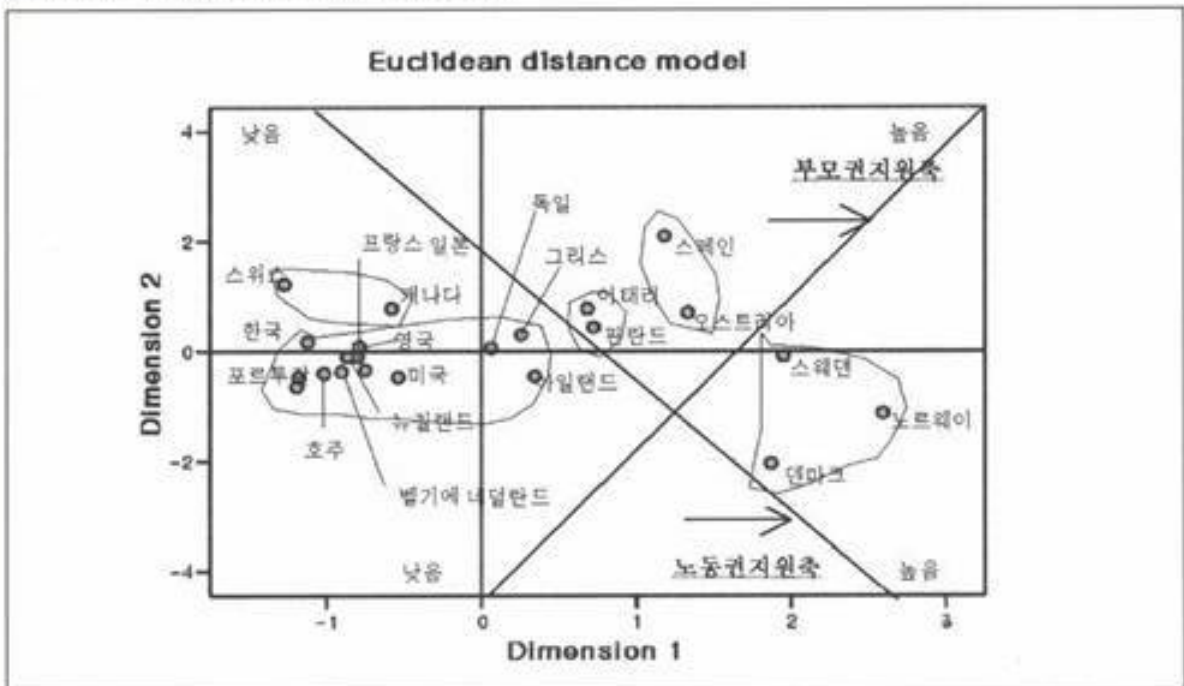
[그림 2]는 다차원척도분석 결과이다¹⁴⁾. [그림 2]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권지원축과 노동권지원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에 대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향하는 축이 노동권 축으로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노동권에 대한 지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좌측 하단에서 시작해 우측 상단으로 향하는 축이 부모권에 대한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축으로 우측상단으로 갈수록 지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유럽3국은 노동권과 부모권의 지원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2차원 평면에 우측에 자리했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이태리와 핀란드 군집을 비교해보면 노동권에 대한 지원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와 캐나다의 노동권과 부모권 지원수준은 다른 4개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분석오차는 0.171로 좋지 않으나 크루스칼 스트레스 분석오차가 다차원척도분석의 적합도를 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동의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다 (장익진,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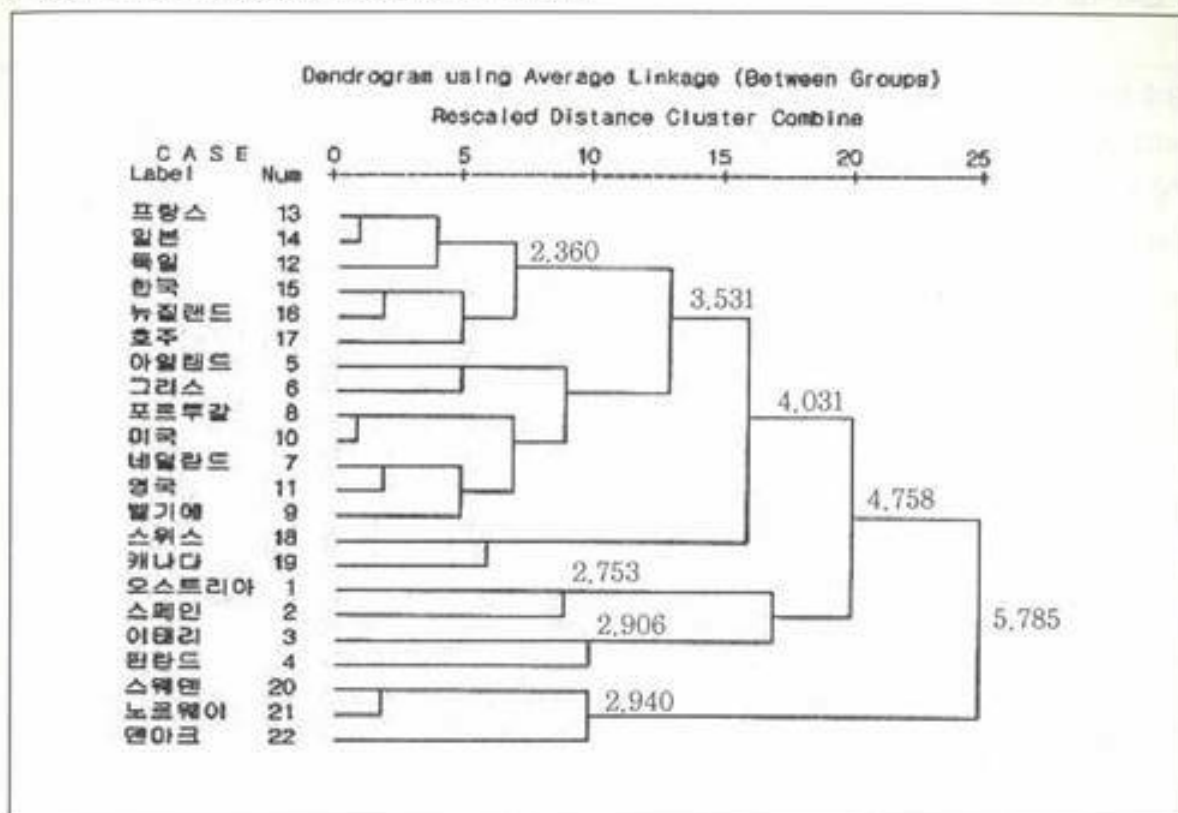
[그림 1] 부모권과 가족권 지원 군집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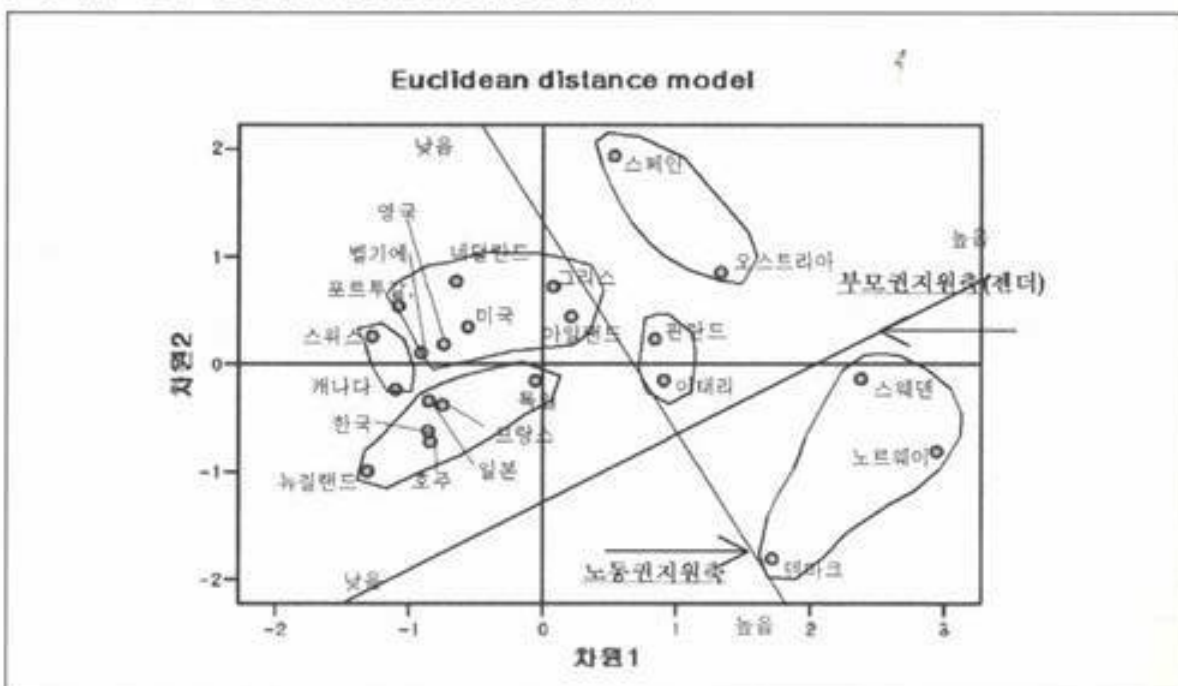
[그림 2] 부모권과 가족권 지원 다차원척도분석 결과



[그림 3]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 군집분석 결과: 젠더역할 공유



[그림 4]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 다차원척도분석 결과: 젠더역할 공유



4) 젠더역할 공유를 추가한 분석

3단계 분석은 젠더역할 공유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모휴가의 권리 성격과 아버지할당제 변수를 추가한 분석결과이다. 즉, 부·모가 자신의 노동력을 탈상품화·가족화시켜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정도와 함께 부·모가 양육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권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지를 포함한 것이다. 젠더역할 공유 관련 변수를 추가했을 때 해석이 적절한 군집 수는 군집계수가 3.0 이상인 6개로 설정하였다. 젠더역할 공유를 고려하지 않은 [그림 2]와 비교했을 때 1개의 군집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그림 2]에서 한국이 속한 군집이 두 개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군집을 형성하였고, 영국, 포르투갈, 벨기에 등은 또 다른 군집을 형성하였다. 젠더역할 공유측면에서 한국이 속한 군집이나 영국이 속한 군집 모두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휴가의 권리 성격은 두 군집 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속한 국가들의 권리성격이 모두 가족권리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영국이 속한 군집의 국가들은 가족권리와 개인권리를 혼합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개인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2단계 분석에서 동일한 군집에 속한 국가군들이 서로 다른 군집으로 분화된 중요한 이유라고 추정된다. 한국과 영국이 속한 군집이 각각 독립적인 군집으로 분화된 것 이외에 다른 군집구성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젠더역할 공유 변수가 추가되었음에도 [그림 4]의 결과¹⁵⁾는 군집수가 추가된 것 이외에 [그림 2]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축의 설정도 [그림 2]와 유사하게 설정되었고, 각 군집의 위치도 스위스와 캐나다 군집이 영국이 속한 군집과 한국이 속한 군집 사이에 위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북유럽3개국은 노동권과 젠더역할 공유를 포함한 부모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이태리 군집,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군집은 부모권 지원에 비해 노동권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속한 군집, 영국이 속한 군집, 스위스가 속한 군집은 노동권과 부모권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분석오차는 0.159이며 RSQ는 0.907이다.

5. 결론 및 정책함의

본 연구는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가족화와 상품화·탈가족화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2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주류복지국가의 논의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기제인 탈상품화에 집중함으로써 물성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논의는 탈상품화·가족화와 상품화·탈가족화를 통해 OECD 22개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을 접근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돌봄이라는 신사회위험을 복지국가 분석의 틀로 수렴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위험을 분석의 틀로 수렴했을 때 주류복지국가 논의에서 시민 주의로 분류되는 북유럽 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 수준과 함께 높은 가족화, 상품화, 탈가족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서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고 간주되는 핀란드는 노동권과 (젠더역할이 공유되는) 가족권 지원 수준을 함께 고려했을 때 다른 북유럽3개국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오히려 북유럽국가들 보다 유럽사회에서 복지 재개발국이라고 간주되는 이태리와 동질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국가들도 탈상품화를 준거로 했을 때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새로운 특성으로 수렴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양립시킴으로써 젠더통합의 관점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는 북유럽 3개국은 주류적 관점에서 뿐 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준거로 분석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을 기준으로 군집화 했을 때와 젠더역할 공유과제를 더 했을 때도 군집화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높은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젠더역할 공유와 일치할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부모휴가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의 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만약 우리가 소위 모성권(여기서는 부모권)과 노동권이 비교대상과 양자택일의 개념이 아니라 병립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독자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오스트리아 등의 제도화 방식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조금 더 깊이 천착해 본다면 이는 노동력의 가족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족화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상대적으로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가족화 수준이 높을 때 여성과 아동의 빈곤율이 높고, 여성의 위치가 가족 내로 고착화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Ferrarini, 2003). 결국 탈상품화와 가족화는 독립적으로 고민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탈상품화 없는 가족화는 부모권을 온전히 보장해 줄 수 없으며, 반대로 가족화 없는 탈상품화 또한 마찬가지다. 부모권의 보장은 탈상품화와 가족화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부모의 노동권 보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 또한 같은 원칙이 적용할 수 있다.

넷째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가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북유럽국가들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문제가 국가 전체로 보면 국가적 정책과제이지만 부·모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단위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동보육의 경우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부·모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원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연석회의를 마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형식적인 제도도입은 시민의 노동권과 부모권 지원에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연석회의 등에서 검토되고 있는 육아휴직 개편 등은 단순히 제도의 형식적 대상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적절한 기간을 보장하며, 부·모의 노동시장 등 사회조건에 따른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부모휴가의 급여수준이 높고, 유연성 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이 높고, 동시에 아동 있는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errarini, 2003). 즉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탈)상품화 수준과 (탈)가족화의 수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는 기존 제도와 도입이 예상되는 제도 모두 성별역할 공유문제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현재 정책당국과 시민단체 등에서 부성휴가와 아버지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스웨덴에서 1974년 부모휴가 도입된 이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논쟁이 20여 년간 진행된 이후 1995년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한 것(Hass, 1992)과 비교하면 이슈제기로부터 대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남성의 가족화가 여성의 (재)가족화에 비해 탈상품화 수준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성휴가와 아버지할당기간의 탈상품화 수준을 충분히 높일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성휴가를 도입하는데 있어 당장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급휴가 또는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자는 논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식이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없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최근 남녀역할 공유의 성공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아이슬란드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모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부·모 각각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동등하게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Gislason 2004, Duvander et al. 2005 재인용).

셋째는 스웨덴에서 여성만이 이용하던 모성휴가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로 발전될 수 있었던 감추어진 힘은 여성의 유급노동력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Lewis and Astrom 1991, Duvander et al., 2005 재인용)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여성유급노동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이후 한국가족정책의 확대발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모든 시민이 일하는 사회를 통해 복지를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공·사적 부문에서의 적극적 노동수요창출은 시민의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는 한국사회에서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예에서 보듯 지방정부는 특히 부·모의 노동권 지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를 보면 지방정부가 국가적 과제를 선도하여 모범을 세우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즉, 지방정부가 지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 정책입안과 실천이 요구된다. 북유럽의 예에서 보듯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대안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를 추진할 사회적 제 세력의 결집이 요구된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연석회의는 이를 위한 중요한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이 남성노동자들로 대변되는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달성된 과제라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은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연대와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에 제 계급과 계층을 결집시키는 것은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김기영·전명식, 1994, 『SAS 군집분석, 고려대학교 통계연구소 통계분석강의총서 9』, 서울: 자유아카데미.
- 유희정·강정희, 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윤홍식, 2005, "가족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291-319.
- 장익진, 1998, 『사회과학 방법론 총서: 다차원 척도 분석법』, 서울: 연암사.
- 하수정·이향미, 2005,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의 만남: 다시 보는 여성학』.
- Women's Oppression Today: The Marxist/Feminist Encounter, 서울: 간디서원.
- 한국여성개발원, 2004, 『2004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 홍두승, 1988, "직업과 계급: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분류", 『한국사회학』 22(4): 23-45.
- Bergqvist, C. and A. Jungar, 2000, "Adaptation or diffusion of Swedish gender model?," pp. 160-179, in *Gendered policies in Europe: Reconciling employment and family life*, edited by L. Hantrais,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Inc.
- Bergqvist, C. and A. Nyberg, 2002, "Welfare state restructuring and child care in Sweden," pp. 287-307,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S. Michel & R. Mahon, New York: Routledge.
- Borchorst, A, 2002, "Danish child care policy: Continuity rather than radical change," pp. 267-286,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S. Michel & R. Mahon, New York: Routledge.
- Bradshaw, J. and N. Finch, 2002,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s in 22 countri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Research Report No 174,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UK.
- Bruning, G., and J. Plantenga, 1999, "Parental leave and equal opportunities: Experiences in eight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195-209.
- Bussemaker J., and K. Kersbergen, 1994, "Gender and Welfare States: Some Theoretical Reflections," pp. 8-25, in *Gendering Welfare States*, edited by D. Sainsbu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astles, F,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Daly, M, 2000, *The Gender Division of Welfare: the Impact of the British and German Welfare State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visscher, S, "Belgium: Parental Insurance and Childcare, Statements and Comments,"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Duvander, A., T. Ferrarini, and S. Thalberg, 2004, "Swedish parental leave and gender equality: Achievements and reform challenges in a European perspective,"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2005: 11.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2002, "A new gender contract," 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pp. 68-95, edited by G. Esping-Andersen, G. Duncan, A. Hemerijck and J. My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errarini, T, 2003, "Parental leave institutions in eighteen post war welfare states,"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Doctoral Dissertation Series* no. 58.
- Haas, L, 1992, *Equal parenthood and social policy: A study of parental leave in Swede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oorens, S., A. Parkinson, and J. Grant, 2005, "Sweden's varying success in offsetting low fertility" pp. 207-25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reimer, M, 2004, "Austria: Parental Insurance and Childcare, Statements and Comments,"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Kremer, M. 2002. The illusion of free choice: Ideals of care and child care policy in the Flemish and Dutch welfare states. In S. Michel & R. Maho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pp. 113-142. New York: Routledge.
- Leria, A. 2002.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J. 1993. 'Introduction: Women, work, family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in *Women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Work, family and the state*, edited by J. Lewis. VM: Edward Elgar.
- Luxemburg Income Study, 2003. 'Family Policy Database, Version 2: Family Leave Policies,' <http://www.lisproject.org/publications/fampol/fampol03.htm>
- Mahon, R. 2002.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lens of child care,' pp. 1-27. in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edited by S. Michel and R. Mahon. New York: Routledge.
- Maier, F. 2004. 'Germany: Parental Insurance and Childcare, Statements and Comments,'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Metcalf, H. 2004. 'United Kingdom: Parental Insurance and Childcare, Statements and Comments,'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Moss, P., and F. Deven, 1999. 'Parental leave in context', pp. 1-24, in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edited by P. Moss and F. Deven. Brussels: NIDI/CBGS Publications.
- Nyberg, A. 2004. 'Parental leave, public childcare and the dual earner/dual carer-model in Sweden,' Discussion Paper, Peer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OECD. 2002.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Paris, France: OECD.
- OECD. 2003a.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2: Austria, Ireland and Japan*. Paris, France: OECD.
- OECD. 2003b.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Paris, France: OECD.
- OECD. 2004.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3: New Zealand, Portugal and Switzerland*. Paris, France: OECD.
- OECD. 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4: Canada, Finland,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Paris, France: OECD.
- Orloff, 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7): 303-328.
- Rostgaard, T., M. Christoffersen, and H. Weise. 1999. 'Parental Leave in Denmark,' pp. 25-44, in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Research and Policy Issues in Europe volume 35*, edited by Moss, P. and F. Deven. The Hague, Brussels: CBGS Publications.
- Selm, A. 2004. 'The Netherlands: Parental Insurance and Childcare, Statements and Comments,' Review Program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pril 19-20, 2004, Stockholm, Sweden.
- Sieboi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 Smith, A. 'Parental leave: Supporting male parenting? A study using longitudinal data of policy variation across the European Union,' Paper given at the EURESOC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Europe, Bad Herrenalb, Germany 23-28 June 2001.
- Taylor-Gooby, P. 2004a.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s: New Paradigm and New Politics?' pp. 209-238,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Gooby, P. 2004b. 'New Risks and Social Change' pp. 1-28,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imonen, V. 2004. 'New risks-Are they still new for the Nordic Welfare States?' pp. 83-110, in *New Risks, New Welfare*, edited by P. Taylor-Goo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토론 |



새로운 가족정책의 구상을 위한 소고(小考)

김승권 _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부장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 또는 탈현대사회로 지칭되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가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 동안 경제개발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의 추진으로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개인과 가족은 경제발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다루어져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가족들(families)의 기능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게 된 것이다. 즉,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사회의 변동',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욕구'에 사회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 염원해 온 '가족관련 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이후 '가족'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족정책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가족정책의 뉴패러다임, 가족과 외부환경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그리고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등에 대한 원고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발제원고 중 '가족과 외부환경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 만큼이나 역동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40여 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의 영향은 한국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정보화와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은 가족관계 및 가구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세기말에

불어닥친 경제위기의 여파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은 가족의 외부환경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논쟁거리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이론인 생태이론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은 사회와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는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사회학, 사회복지, 가정학, 가족학, 보건의료, 그리고 가족치료학자들에 의하여 다학제적(inter-disiplinary)으로 접근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발제자의 원고는 '가족과 외부환경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핵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생활보장, 평등, 민주적 가족공동체를 위한 국가책무, 가족정책의 포괄성, 형평성, 다양성, 개인의 선택권과 부모의 책임성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젠더적 시각에서의 가족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지원시책을 제안하고 직장가정의 양립, 가족부양, 아동양육, 임신 출산 양육, 건강, 경제안정, 안전생활, 민주평등한 가족관계, 이혼예방 및 이혼가족지원, 가족문화 등의 가족기본시책을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을 비전 및 원칙, 목표 및 추진전략, 핵심영역 및 정책과제 등을 제안하고,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한국가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가족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를 발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보겠다. 즉, 기본계획, 핵심 정책과제, 세부과제 등이 서울시 가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본 원고의 주제인 '외부환경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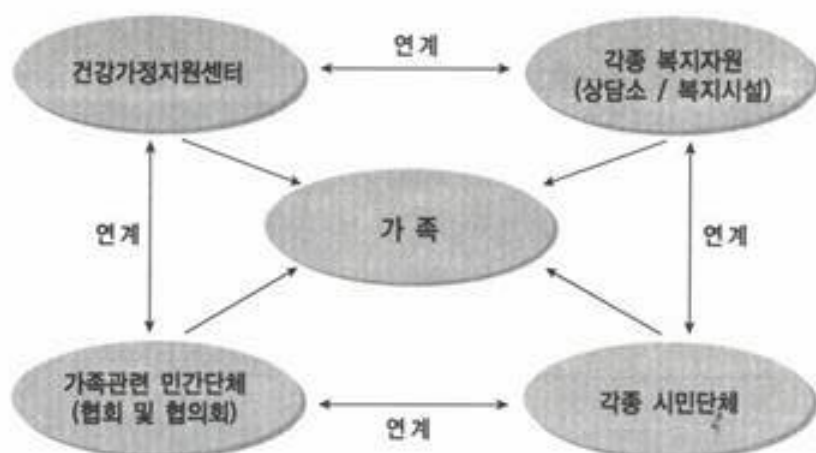
첫째, 전술(前述)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가족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족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임은 발제자도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사실 지역사회에는 많은 복지자원이 있고, 가족 및 그 구성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하드웨어적 요소가 많이 있다. 이들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가족정책의 기본시책에는 질환, 장애 등에 대한 가족부담 완화정책과 전문보호시설 확대 및 간호휴가 제도, 임신 출산 양육 권리 보장, 태아검진, 산전후 건강관리,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지원대책, 가정폭력 및 위험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가족과 그 구성원을 위한 정책이므로 광의의 개념에서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정책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즉, 대부분의 개인은 가족구성원이고, 정책의 대상은 전체 국민이므로 대부분의 정책은 개인이 속한 가족과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범주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정책으로 볼 것인가, 가족정책으로 볼 것인가, 두 정책 모두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동에 대한 위험환경을 가족정책으로 볼 것인가, 아동정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두 정책 모

두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뿐만 아니라 기초보장사업, 자활사업, 주거정책, 보건의료정책, 취업대책(청년실업, 노인취업, 여성취업 등 포함), 노동정책, 여가 레저정책 등이 모두 가족정책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

결국 가족정책인지의 여부는 특정정책이 가족을 단위로 한 것인가, 가족구성원인 개인을 단위로 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논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국가정책이 가족정책으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과 연관된 외부환경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핵심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상담소, 사회복지이용시설, 생활시설을 포함한 각종 복지자원, 가족관련 민간단체, 다양한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족을 둘러싼 외부체계와의 긴밀한 협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가족정책의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발전적인 가족정책의 추진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여 왔던 가족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사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가족보호 및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 중 가족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부 처	사 업 명	04 예산
문 화 관 광 부	청소년상담실운영	2,009
농 립 부	농업인자녀학자금	15,305
	농가도우미지원	1,152
	여성농업인센터운영	1,526
보 건 복 지 부	공동생활가정운영	1,405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224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5,854
	소년소녀가장지원	3,952
	가정위탁양육지원	5,376
	퇴소아동자립정착금	600
		10,935

다섯째,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이 지역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농촌지역, 도시저소득층 지역, 여성노동자가 많은 지역, 미혼독신자들이 많은 지역, 외국근로자가 많은 지역, 여성이민가족이 많은 지역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족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체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가족을 둘러싼 외생체계가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다룰 것인가는 학자에 따라 상이(相異)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논의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서울 가족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고, 가족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진미정 _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서울시의 가족정책 수립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여성에서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먼저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가족정책을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향 및 과제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관련된 쟁점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주장되고 주제별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가족에 대한, 그리고 가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관점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오늘 심포지엄의 발표들은 서울시 가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가족정책의 내용을 수립하는데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발표들이라 생각한다. 특히 윤홍식 교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들의 가족정책'은 가족정책을 조망하는 이론적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정책의 기본 접근과 성격을 규정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다시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의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복지국가의 재편구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가족정책을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OECD 22개국의 부모휴가와 아동보육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류한 것도 자료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조망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 즉 일과 가족의 양립은 가족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으나, 노동권과 부모권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은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의 관점과 이해를 배제하게 되기 쉬워 가족정책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성 통합적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공사 영역의 분리를 극복한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다른 구성원 즉, 미성년 자녀나 노부모에 대한 논의가 가족정책의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축소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가족 내에서 젠더에 따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듯이, 세대 관계에 따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모중심의 가족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세대 관계 내에서의 상대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휴가나 아동보육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 정작 아동은 돌봄의 대상자로서만 다루어지고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관점은 배제되기 쉽다.

또 한 가지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가족정책에서 제도적, 법적, 경제적 접근 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문화적 접근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와 정신문화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는다면 가족정책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유리된 정책, 혹은 정책의 오남용으로 연결되기 쉽다. 문화적 측면에서, 가치의 측면에서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가족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부모휴가나 모성/부성휴가는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간여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족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보육 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모델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보육비 지원 분담은 어떤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육시설 인증 및 평가 업무는 어느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실보육료 지원과 단기보육에 대한 인력파견 및 관리 등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보완하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다루어지기 힘든 부분이나 배제되기 쉬운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범위와 역할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정책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가족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성격과 요구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승미 _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우석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책적 지원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가 이러한 심포지엄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본 토론자는 현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주요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고민하는 입장에서 본 토론에 임하고자 하며, 이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작년에 6개소로 시작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자체 지원에 힘입어 15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에는 국비 및 지자체 지원의 센터가 5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센터의 확대와 더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 모색을 위해 2006년에는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부부교육, 남성대상의 부모교육, 한부모가정 통합프로그램, 이혼전후 상담,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봉사활동 등의 공통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개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서울시 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2006년에 21개소가 개소될 전망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반적인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고 앞서 변화순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서울지역의 21개 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조기에 정착,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재 지역 센터의 예산상

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 사업개발, 프로그램 및 매뉴얼개발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며, 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및 문화사업 전개 역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의 전개와 연속성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설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관한 모형개발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자원, 특히 가족관련 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유관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무엇을 연계함으로써 전체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개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지역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방문형 부모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은행과 연계하여 한부모가정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활발한 연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시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모형과 방안-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남성대상의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과의 연계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특히 가족정책은 기존의 개별대상별 정책-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은 이미 여성가족부가 2005년 12월에 기본골격을 소개한 바 있으며, 이를 이어 경기도 역시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기본안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수요 파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가족들의 정확한 실태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2005년에 여성가족부가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서울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가족실태조사의 실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사회의 '가족'도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정책은 변화하는 가족과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서울시 가족정책 심포지엄 '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전략'은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짚어보고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본 토론문에서는 윤홍식 교수님의 발표를 중심으로 해외사례에 비추어본 가족정책 발전방향과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1.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돌봄'

발제논문은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에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OECD 22개국의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을 유형화하였다.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모휴가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가족권리로서 주어지며 유연성이 부족하고 보육시설이용에서도 특히 0-2세 영아의 보육시설이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GDP대비 정부의 아동보육 지원 지출비율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가 '아동돌봄(양육)'에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령화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돌봄(부양)'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우리사회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수준은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화속에서 현저하게 감소한 가족내 돌봄제공 자원을 고려할 때 아동돌봄에 대한 부모권 지원으로서의 부모휴가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돌봄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육아휴직개편 등이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쳐서는 안될것임이 지적인 대목에 주목하여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 실시되었던 가족정책 수요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제가 있어도 승진이나 승급에 대한 불안과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실제로 활용되기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육아휴직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포함, 대체인력제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2. 가족내 남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원

남성과 여성 모두 생계부양자와 돌봄제공자라는 역할이 공유되는 것이 보다 진보된 형태의 부모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 더하여 가족내 남성의 역할, 즉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이것은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성의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정서적, 비공식적 투자에 소홀했던 남성들이 중년, 노년기에 이르러 가족관계에서 많은 부적응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 수준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가족정책의 범위와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 평등가족정책, 소득보장관련정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아동, 여성, 노인, 노동,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할 때 가족과 관련한 각 부처간의 조율 및 연계 시스템은 가족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계의 중요성은 가족정책 및 사업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단위에서 더욱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정책 범위의 다양성에 더하여 가족정책 대상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도 가족정책수립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노인수발가족,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입양아가족, 조손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가족정책사업이 지역사회의 개별가족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지역사회내의 가족지원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 실무자들에게 의해 강조된바 있다.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자원들이 파악되고 이러한 지역사회 가족지원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 재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4.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환경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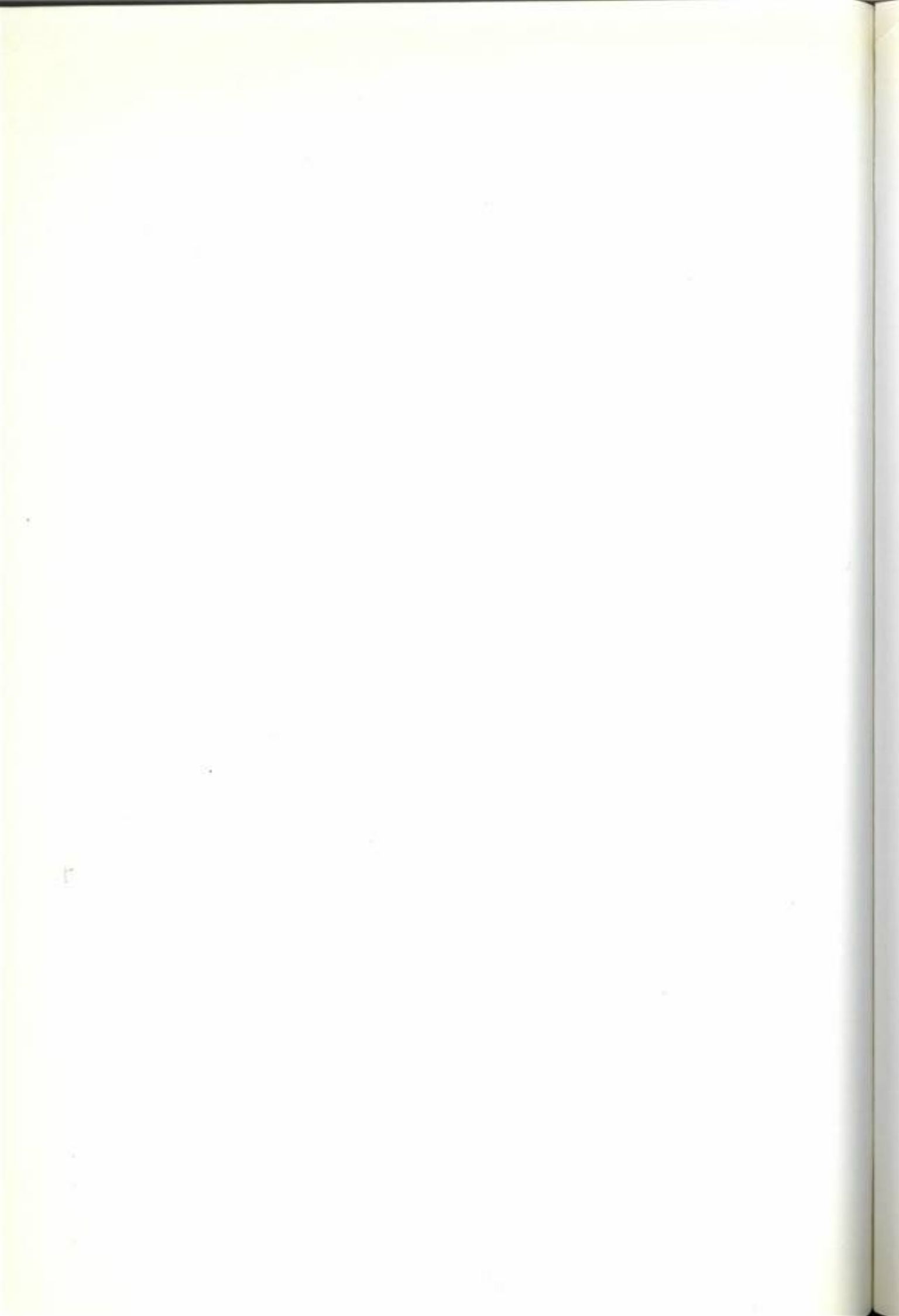
최근 방영되고 있는 몇 개의 TV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사회에 숨겨져있는 가족 내 폭력의 모습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 배우자학대, 노인학대에 대하여 현재 개별적인 프로그램 및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을 총체적인 '가정폭력'의 틀 안에서 통합하여 가족의 문제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5. 서울의 지역성과 가족정책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문화, 사회환경이라는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양상과 더불어 서울시 가족정책수립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서울시라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일 것이다. 서울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아야 하며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서비스체계, 시설 및 인적자원)이 먼저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N.O.T.E.

N.O.T.E.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
 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
 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하
 고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하는 여
 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
 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여
 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2006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심포지엄

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전략



서울특별시  서울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재) 서울여성

TEL : 02-776-5577 (교함105번) FAX : 02-776-6556